

2023학년도

학교 안전 교육 계획



신천중학교

목 차

I. 개요

1. 학교 현황
2. 학교 안전 조직
3. 학교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 절차

II. 학교 안전 현황

1. 전년도 학교 계획 추진 실적
2. 학교 안전 현황 분석 및 개선 방향

III. 안전 교육 및 예방 활동 계획

1. 안전한 교육활동 운영 계획
2. 학생 및 교직원 안전교육 시행 계획
3. 교육활동 안전 교육

VI. 학교시설 안전 점검 · 관리 · 조치

1. 학교시설 안전 점검
2. 학교시설 안전 관리 및 조치

V. 학교안전사고 피해회복

1. 안전공제회 사고통지 및 공제 급여 청구 절차
2. 학교안전공제중앙회 학교 배상 책임 공제 급여 청구 절차
3. 안전사고 피해 회복

[붙임]

1. 2022년 학교안전계획 추진실적 평가표
2. 2023년 학교안전계획 수립 평가표
3. 2023학년도 교실 배치도 및 대피로
4.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1. 개요

1. 학교현황

가. 일반 현황

학교명	신천중학교	설립 구분	공립		
주 소	우: 14953 경기도 시흥시 포도원로 88-1 (신천동)				
전 화	070-7097-0404	FAX	031-316-2092	홈페이지	www.shshincheon.ms.kr
교 장	신**	학교안전책임관	정**		

나. 학생 및 교직원 현황

학생 (명)	1학년	2학년	3학년	합계
	66	97	96	2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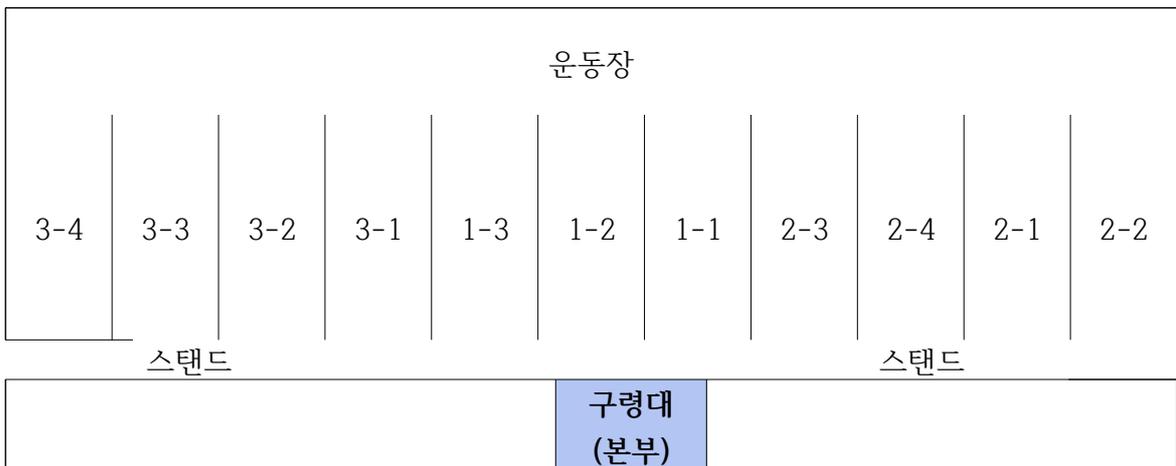
교직원 (명)	교원	행정직원	급식업무직원	학생보호인력	기타 (방역, 공익근무)	합계
	26	11	5	2	3	47

다. 교실 배치도 및 대피로 (붙임 3)

라. 재난 시 대피 장소(운동장)

정문

후문



2. 학교 안전 조직

가. 안전 관련 추진 조직도



나. 안전 관련 업무 분장

담당부서		관련업무	
교 무 실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width: 50%;">교육기획부 미래교육부</td> <td style="width: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교육 및 창체 교육 지원 - 교내지원반장(담당자별 세부역할 지시) - 학생 현황 파악 및 직원회의 개최, 비상연락(전직원, 학부모) - 피해 학생 및 가족 지원, 대외 업무 및 언론 대응, 학사일정 검토 </td> </tr> </table>	교육기획부 미래교육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교육 및 창체 교육 지원 - 교내지원반장(담당자별 세부역할 지시) - 학생 현황 파악 및 직원회의 개최, 비상연락(전직원, 학부모) - 피해 학생 및 가족 지원, 대외 업무 및 언론 대응, 학사일정 검토
	교육기획부 미래교육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교육 및 창체 교육 지원 - 교내지원반장(담당자별 세부역할 지시) - 학생 현황 파악 및 직원회의 개최, 비상연락(전직원, 학부모) - 피해 학생 및 가족 지원, 대외 업무 및 언론 대응, 학사일정 검토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width: 50%;">교육연구부</td> <td style="width: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교원 연수 - 관련 문서 작성 </td> </tr> </table>	교육연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교원 연수 - 관련 문서 작성
	교육연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교원 연수 - 관련 문서 작성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width: 50%;">학생체육안전부</td> <td style="width: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안전계획 수립 및 전반적인 안전 관련 업무 주관 - 비상조직 구축 및 비상훈련 실시, 사고대응 실무 - 현장대응반장(담당자별 세부역할 지시) - 교감 부재 시 업무대리(현장사고 대책 총괄), 학년 피해 상황 종합 - 사안 관련 학부모 응대 및 의견수렴, 학년 관리(학생 동요 및 추가 사고 방지 대책 수립), 피해학생 후송병원별 학생인원 파악 - 시간대별 조치사항 기록(현장대응팀 일지 작성) </td> </tr> </table>	학생체육안전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안전계획 수립 및 전반적인 안전 관련 업무 주관 - 비상조직 구축 및 비상훈련 실시, 사고대응 실무 - 현장대응반장(담당자별 세부역할 지시) - 교감 부재 시 업무대리(현장사고 대책 총괄), 학년 피해 상황 종합 - 사안 관련 학부모 응대 및 의견수렴, 학년 관리(학생 동요 및 추가 사고 방지 대책 수립), 피해학생 후송병원별 학생인원 파악 - 시간대별 조치사항 기록(현장대응팀 일지 작성)
	학생체육안전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안전계획 수립 및 전반적인 안전 관련 업무 주관 - 비상조직 구축 및 비상훈련 실시, 사고대응 실무 - 현장대응반장(담당자별 세부역할 지시) - 교감 부재 시 업무대리(현장사고 대책 총괄), 학년 피해 상황 종합 - 사안 관련 학부모 응대 및 의견수렴, 학년 관리(학생 동요 및 추가 사고 방지 대책 수립), 피해학생 후송병원별 학생인원 파악 - 시간대별 조치사항 기록(현장대응팀 일지 작성)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width: 50%;">학년부</td> <td style="width: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내외 생활지도 및 체험활동 안전 - 사고현장 이동 및 상황파악, 정보수집, 시간대별 상황 보고 - 최초 사안 조사 및 사안보고서 작성 </td> </tr> </table>	학년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내외 생활지도 및 체험활동 안전 - 사고현장 이동 및 상황파악, 정보수집, 시간대별 상황 보고 - 최초 사안 조사 및 사안보고서 작성
	학년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내외 생활지도 및 체험활동 안전 - 사고현장 이동 및 상황파악, 정보수집, 시간대별 상황 보고 - 최초 사안 조사 및 사안보고서 작성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width: 50%;">학급 담임</td> <td style="width: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년부와 긴밀하게 협조 - 사안관련 학생 정보제공(상담기록, 교우관계 등), 보호자 연락 - 학급 학생의 심리적 안정 및 교실 정상화 노력 </td> </tr> </table>	학급 담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년부와 긴밀하게 협조 - 사안관련 학생 정보제공(상담기록, 교우관계 등), 보호자 연락 - 학급 학생의 심리적 안정 및 교실 정상화 노력 	
학급 담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년부와 긴밀하게 협조 - 사안관련 학생 정보제공(상담기록, 교우관계 등), 보호자 연락 - 학급 학생의 심리적 안정 및 교실 정상화 노력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width: 50%;">진로상담부</td> <td style="width: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실 전화응대 - 시간대별 조치사항 기록(현황판 및 체크리스트, 일지 작성) - 사안 관련 학급 및 현장목격자 등 상담 필요 학생 상담지원 (필요 시 외부지원팀 자문 및 지원 요청) </td> </tr> </table>	진로상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실 전화응대 - 시간대별 조치사항 기록(현황판 및 체크리스트, 일지 작성) - 사안 관련 학급 및 현장목격자 등 상담 필요 학생 상담지원 (필요 시 외부지원팀 자문 및 지원 요청) 	
진로상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실 전화응대 - 시간대별 조치사항 기록(현황판 및 체크리스트, 일지 작성) - 사안 관련 학급 및 현장목격자 등 상담 필요 학생 상담지원 (필요 시 외부지원팀 자문 및 지원 요청)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width: 50%;">보건</td> <td style="width: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보호학생 실태 조사, 응급구조 지원 및 응급처치교육 - 응급조치 및 의료자문 - 학교안전공제회 업무 처리(피해 학생 및 교직원 등 보상) </td> </tr> </table>	보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보호학생 실태 조사, 응급구조 지원 및 응급처치교육 - 응급조치 및 의료자문 - 학교안전공제회 업무 처리(피해 학생 및 교직원 등 보상) 	
보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보호학생 실태 조사, 응급구조 지원 및 응급처치교육 - 응급조치 및 의료자문 - 학교안전공제회 업무 처리(피해 학생 및 교직원 등 보상)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width: 50%;">행정실</td> <td style="width: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적 및 물적 안전점검, 학교주변 안전 - 학생 귀교 대책(이동수단 확보)수립, 현장이동 지원 및 인적·물적 지원 - 물적 피해 현황 파악, 추가 사고 위험 여부 확인 - 교육시설공제회 업무 처리(재산 및 시설), 행·재정 지원 </td> </tr> </table>	행정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적 및 물적 안전점검, 학교주변 안전 - 학생 귀교 대책(이동수단 확보)수립, 현장이동 지원 및 인적·물적 지원 - 물적 피해 현황 파악, 추가 사고 위험 여부 확인 - 교육시설공제회 업무 처리(재산 및 시설), 행·재정 지원 	
행정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적 및 물적 안전점검, 학교주변 안전 - 학생 귀교 대책(이동수단 확보)수립, 현장이동 지원 및 인적·물적 지원 - 물적 피해 현황 파악, 추가 사고 위험 여부 확인 - 교육시설공제회 업무 처리(재산 및 시설), 행·재정 지원 		

다. 학교식중독 교내대책반의 구성 및 운영



라. 응급구조체계 조직

각종 안전사고 및 재난사고의 경우, 시의적절한 응급구조는 사고피해를 최소화하고 조속한 일상복귀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관건



마. 유관기관 협조 체계

기관명	소방서	보건소	경찰지구대	지역/유관기관
신천중학교	담당: 시흥소방서 (은행119안전센터) (031-310-0511)	시흥정왕보건지소 (031-310-5901)	신천치안센터 (031-312-0112)	신천연합병원 010-310-6300

3. 학교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 절차

- (동시보고)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상황파악을 위해 사고현장에서 교육지원청, 시·도교육청, 교육부에 동시 보고



- (보고방법) 현장사고 상황파악 후 교육부 안전 대표메일*을 통하여 사고 보고(긴급한 사안일 경우 즉시 보고)

* moe119@korea.kr 메일로 사고 보고 시 담당자 개인메일로 자동 전송

- (보고기준) 인명피해가 발생하거나 시설피해가 심대한 경우
 - (교육활동 중 발생) 병원치료를 요하는 중상 이상의 사고

- (교육활동 외 발생) 사망 1명 또는 부상 5명 이상의 사고
- 학교관련 시설의 화재, 붕괴, 폭발 사고 등
- 학교현장의 폭발사고 등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시설피해가 심대한 경우
- 학교현장에서 신종 전염병 최초 발생 및 법정 전염병 집단 발생 시
- 기타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사고 및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재난 발생 시

II. 학교안전 현황

1. 전년도 학교계획 추진 실적

가. 학교안전교육 추진 실적

1) 교직원 안전교육 직무연수 이수 현황 (기준 : 2022년)

연도	구분	교직원 수(명)			안전관련 전문교육(15시간) 이수			
		교원	직원	계 (A)	교원	직원	계 (B)	이수율 (B / A)×100
2021.3. ~ 2024.2	2021	26	19	45	19	14	33	73
	2022	28	18	46	17	13	30	65
	2023							

※ 3년(2021~2023)마다 모든 교직원이 안전교육 직무연수(15시간 이상) 이수

2) 학생 및 교직원 심폐소생술 교육 현황 (기준 : 2022년)

교육대상 인원수(명)				교육실시 인원 수(명)				실사비율%	
학생 (A)	교직원 수			학생 (C)	교직원 수			학생 (C/A)	교직원 (D/B)
	교원	직원	소계 (B)		교원	직원	소계 (D)		
306	28	18	46	101(2학년)	28	16	145	33	95.7

3) 안전영역별·교육과정영역별 학생안전교육 이수시간 현황 (기준 : 2022년)

안전영역(급별 필수이수시간)	교육과정영역별 이수시간		창의적 체험활동 (나침반 포함)	이수시간 계
	1학기	2학기		
생활안전(6)	5	5	2	12
교통안전(6)	5	5	2	12
폭력 및 신변보호(5)	4	4	4	12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5)	4	4	2	10
재난안전(6)	4	4	2	10
직업안전(3)	1	1	1	3
응급처치(2)	1	1	1	3
계(33)	24	24	14	62

2. 학교 안전사고 현황분석 및 개선방향

가. 학교안전사고 현황(2022년)

1) 활동시간별

활동시간별								합계
체육수업	점심시간	수업시간	휴식/정소	학교행사	특별활동	등하교	석식/기숙	
7	9	1	1	1	2	0	0	21

2) 활동장소별

장소별					합계
운동장	부속시설	교 실	통 로	교외활동	
8	6	3	4	0	21

3) 사고 형태별

형태별						합계
사람과의 충돌	물리적힘 노출	낙상-넘어짐	낙상-미끄러짐	낙상-떨어짐	기타	
2	7	7	4	0	1	21

4) 사고 행동별

행동별											합계
공부	실험/실습	구기운동	무도운동	육상	기타운동	식사/수면/휴식	보행/주행	장난/놀이	탑승/승선/자전거	기타	
0	2	9	0	0	1	0	4	4	0	1	21

5) (학교안전사고 분석 결과)

- 체육시간, 점심시간 등 신체 활동이 많은 시간에 안전 사고가 발생 빈도가 높음.

나. 조치 계획

- 신체 활동을 하기 전에 철저히 준비운동을 할 수 있도록 안전 교육을 강화함.
- 학생건강체력측정(PAPS)을 통해 자신의 체력 수준을 이해하고, 안전한 체육활동을 위해서 자신의 신체활동을 구성하고 조절하게 함.

III. 안전교육 및 예방활동 계획

1. 안전한 교육활동 운영 계획

가. 학사일정별 안전관리 연간 계획

구분	학사일정		안전교육(창의적 체험활동)	비상훈련	시설관리
	교내	교외			
3월	입학식, 개학식		-신학기 안전교육 -학교폭력예방교육(사이버) -보건위생관리교육 -장애인식개선교육 -인터넷과 스마트폰과의존예방교육	연간 훈련계획 수립	매월 안전점검의 날
4월	1차 지필평가	현장체험학습	-4.16 추모 및 안전사고예방교육 -현장체험학습 안전교육		매월 안전점검의 날
5월			-교내·외 안전사고 예방 지도 -재난안전교육	재난대피훈련 민방위훈련	매월 안전점검의 날
6월			-수상안전교육		매월 안전점검의 날
7월	2차 지필평가 여름방학		-폭염 관련 예방교육 -성폭력예방교육 -생명존중(자살예방)교육 -흡연예방교육		매월 안전점검의 날
8월	개학		-물놀이 및 식중독 예방 -학교폭력예방교육(사이버) -성매매예방교육 -가정폭력예방교육 -인터넷과 -스마트폰과의존예방교육 -흡연 및 약물오남용예방교육 -장애인인식교육		매월 안전점검의 날 학교시설 안전점검 결과 보고
9월	1차 지필평가		-태풍 대응교육	화재 훈련 (소방서 합동)	매월 안전점검의 날
10월	축제		-등산 및 야외활동 안전교육		매월 안전점검의 날
11월	2차지필평가 (3학년)		-화재 예방 지도 강화 -성폭력예방교육		매월 안전점검의 날
12월	2차지필평가 (2학년)		-겨울철 관련 안전교육		매월 안전점검의 날
1월	졸업식, 종업식		-졸업식 안전교육		매월 안전점검의 날
2월					매월 안전점검의 날

나. 재난대비 훈련 연간계획

일정	훈련명	훈련 유형	대상	담당자	비고
3월	연간 훈련계획 설명회	토의	모든 교직원	학생체육안전부장	
5월	재난대피훈련	현장실습	모든 교직원과 학생	학생체육안전부장	
9월	화재 훈련	현장실습	모든 교직원과 학생	학생체육안전부장	소방서 합동

다. 다중밀집 인파사고 예방 계획

1) 다중밀집 행사* 시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교육행사 진행 시 학생·교직원, 사람들 간 대형간격 유지하는 등 인파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 철저

2) 사고 발생 시 119신고 및 응급조치(참고2) 등 상황에 맞는 응급조치 실시

- 학교 축제, 체육대회, 입학 및 졸업식, 현장학습, 졸업여행, 교외 행사장 방문 등에서 학생·교직원, 사람들 간 대형 간격을 유지하기
- 사람이 많이 밀집된 곳에서는 앞 사람과의 간격 유지하며 걷기
- 움직일 수 없거나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라면 그 장소 벗어나기
- 스마트폰을 보거나 주의산만하게 행동하지 말고 전방 주시하며 걷기
-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다면 주변 사람에게 큰소리로 상황 알리기
- 팔짱을 끼거나 가방, 옷 등으로 흉부 보호하기
- 넘어졌을 때 위험성 줄이기 위해 몸을 작은 자세로 웅크려 보호하기
- 운동화처럼 편하고 몸을 지탱할 수 있는 신발 신기

라. 통학차량 안전관리

1) 통학버스 운영기관은 매일 통학차량 운영 전·후로 차량의 상태 등을 점검하기 위한 점검표등을 작성·보관
* 타이어, 브레이크, 조향장치 등 차량 안전운행과 직접 연관이 있는 항목을 중심으로 매일 점검하며, 점검서식은 학교 실정에 맞게 작성하여 활용

2)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기관은 안전운행기록을 분기별로 교육감(또는 교육장)에게 제출(도로교통법 제53조제7항)

3) 통학버스관리시스템(schoolbus.ssif.or.kr)에 통학버스 등록 및 분기별 안전운행기록 온라인 입력 및 제출

마. 안전약자(요양호자) 안전지도

1) 요보호학생의 개념

가) 요보호학생이란 신체적·정신적 건강상의 이유로 일반 학생들과 달리 교사의 세심한 관찰과 관리가 필요한 학생을 말한다.

나) 이들 학생들은 선·후천적인 지병을 보유하고 있거나, 정신적인 병적 소인이 있어 이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을 경우 요보호학생의 예상치 못한 발병, 발작 등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요보호학생을 포함한 학생들의 원만한 학교생활을 위해서도 별도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2) 요보호학생 보호업무 개요

가) 신학기 건강실태조사를 통해 건강문제를 가진 학생을 파악하고 개별면담과 정기적인 건강상담을 통해 요보호학생이 학교생활을 안전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응급상황발생을 예방하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나) 학교 차원의 안전관리를 위해 전체 교직원에게 요보호 학생 명단을 배부하는 것과 함께 학생 주요 건강이상 사항, 유의하여 관찰을 요하는 사항, 담당교사 조연 등에 관한 정보를 수시로 공유하면서 건강이상 학생에 대한 보호를 철저히 한다.

다) 요보호학생 기록은 인권을 보호하면서도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보관·관리토록 한다. 기록지에는 전화번호, 지정병원·투약정보 등 의료 정보, 기타 유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교직원은 요보호학생의 개인 신상, 병력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보안관리가 필요하다.

3) 요보호학생 관리계획 및 상담지도

가) 보건교사가 주관하여 각반의 요보호자 명단을 전체 교사의 교무수첩 기재, 교내 전산망을 통한 자료 공유 및 교사 연수 시 안내 등을 통해 요보호학생 안전지도에 만전을 기한다. 학년 초에 확인되지 않은 경우나 현재 이후에 발병한 환자에 대해서는 추가로 명단을 파악하여 관리한다.

나) 신체적 결함 때문에 심리적으로 손상을 받기 쉬운 상태이므로 급우들에게 장애에 대해 설명을 하여, 놀리거나 곤경에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하고,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급우들에 대한 설명과 도움 요청은 요보호학생의 부모가 공개를 승인한 경우에 한한다.

다) 감수성이 민감한 시기이므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요보호학생에 대한 이해와 따뜻한 사랑으로 대해 주

어야 한다. 체육, 외부 체험활동 등 활동량이 많은 시간에 특히 세심한 관찰과 주의가 필요하고, 보건교육을 통하여 사고 방지, 시력 보호, 예방접종 등의 필요성을 가르쳐준다.

라) 학부모, 담임교사, 보건교사와 수시면담을 통하여 학생의 건강상태나 심리상태를 파악하여 관리한다. 의학적 치료를 하지 않는 학습 장애, 언어 장애나, 정신적 문제를 가진 학생의 경우는 상담교사와 협조하여 학교 적응 등의 전문 상담을 실시한다.

마) 계속적인 추후관리를 실시하여 건전한 학교생활 속에서 스스로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표를 둔다. 비상시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요보호학생의 연락처 변경 시 보건실로 통보한다. 응급상황 시 요보호학생이 주로 이용하는 병·의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바. 안전 문화 확산

1) 안전 가치의 최우선적 인식 문화 확산

- 학교 안전의 가치는 안정적 교육활동 수행의 기본 전제가 되므로 제반 교육활동 계획 수립부터 실시에 이르기까지 최우선적으로 학교 안전의 가치를 고려하는 학교 문화 만들기

2) 안전 업무 관련 교직원간 역할 명료화

가) 학교장은 학교안전 관련 업무에 대한 교원과 직원의 역할과 임무를 명확히 설정

나) 학교 구성원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안전한 교육활동이 되도록 적극 노력

※ 학교안전은 담당 교원만으로는 업무추진이 어려우므로 교원과 직원 간 적극적인 협력과 소통이 필요

3) 세부 내용

- 매월 4일 안전 점검의 날 실시
- 매월 생활 안전 관련 가정통신문 발송 및 홈페이지 게시
- 월, 수, 금 나·침·반 교육 실시

2. 학생 및 교직원 안전교육 시행 계획

가. 학교안전교육 연간 계획

7대표준	교육과정	안전교육 실시현황					
		1학기		2학기		계	
		시간	횟수	시간	횟수	시간	횟수
생활안전(10)	교과	5	5	5	5	10	10
	창체						
교통안전(10)	교과	5	5	5	5	10	10
	창체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10)	교과	5	5	5	5	10	10
	창체	3	3	2	2	5	5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10)	교과	4	4	4	4	8	8
	창체	3	3	2	2	5	5
재난안전(6)	교과	3	3	3	3	6	6
	창체						
직업안전(3)	교과	1	1	2	2	3	3
	창체						
응급처치(2)	교과	1	1	1	1	2	2
	창체						

※7대 안전표준안

구분	생활안전	교통안전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	재난안전	직업안전	응급처치	총계
교육시간 및 횟수	10시간 학기당 2회 이상	10시간 학기당 3회 이상	10시간 학기당 2회 이상	10시간 학기당 2회 이상	6시간 학기당 2회 이상	3시간 학기당 1회 이상	2시간 학기당 1회 이상	51 시간
교육 내용	시설안전 실내활동안전 실외활동안전 여가활동안전 식생활안전	보행자 자전거 오토바이 자동차 대중교통	언어, 신체폭 력 자살 및 집단 따돌림, 성폭력, 사이버 폭력, 아동학대, 유괴 및 미야사고 방지 등	흡연, 음주, 의약품, 인터넷(게 임, 스마트 폰) 중독, 정보보호 등	화재, 폭발붕괴, 화학적 오염, 자연재난(지진 대응 교육) 등	실험, 실습, 특성화고 취업준비 등	기본 응급처치 유형별 응급처치	

영역	교과	학년	학기	단원명	성취기준	수업내용 재구성	차시
교통안전 교육	수학	1학년	1학기	1-2. 정수와 유리수	9수01-03	양수와 음수로 교통안전 표지판 만들어보기	1차시
	수학	1학년	2학기	4-1 기본도형	9수04-01	경사각이 몇 도 이하일때 도로가 안전한지 알아보기	1차시
	영어	1학년	1학기	3. Different places, Different foods	9영02-06	장소 이동에 따른 교통수단 종류에 대해 알 고 각 교통수단을 이용할 시 지켜야할 안전 수칙 확인	1차시
	영어	1학년	2학기	8. Science All Around	9영02-02	교통수단의 과학 원리에 대해 각자 조사한 후, 지켜야할 안전 수칙 토의하기	1차시
	음악	1학년	1학기	노래의 행복	9음01-03	교통 안전 캠페인 송 만들기	1차시
	음악	1학년	2학기	노래의 행복	9음01-03	교통 안전 캠페인 송 만들고 함께 부르기	1차시
	진로	1학년	1학기	2-1. 변화하는 직업 세계의 이해	9진02-01	변화하는 직업 세계 그림으로 표현하기	1차시
	진로	1학년	2학기	3-2. 직업 정보의 탐색	9진03-03	직업 체험 활동	1차시
	체육	1학년	1학기	5.안전	9체05-08	안전사고의 종류와 방법을 이해하고 예방대 책을 조사하기	1차시
	체육	1학년	2학기	5.안전	9체05-08	안전사고의 종류와 방법을 이해하고 예방대 책을 조사하기	1차시
	수학	2학년	1학기	2-1 일차부등식	9수02-09	부등호 기호를 사용하여 교통안전 표지판 만들기	1차시
	수학	2학년	2학기	4-1 삼각형의 성질	9수04-10	교통표지판은 왜 삼각형 모양이 많을까? 외부로 나가는 여가활동 시 이동하는 교통 수단의 안전수칙에 대해 영어로 토의하기	1차시
	영어	2학년	1학기	4. Go For It	9영02-02	자신이 평소에 자주 이용하는 교통수단의 종류와 안전수칙 발표하기	1차시
	영어	2학년	2학기	6. Into Outer Space	9영02-02	자신이 평소에 자주 이용하는 교통수단의 종류와 안전수칙 발표하기	1차시
	음악	2학년	1학기	함께 노래하는 우리	9음01-03	교통 안전 캠페인 송 만들기	1차시
	음악	2학년	2학기	함께 노래하는 우리	9음01-03	교통 안전 캠페인 송 만들고 함께 부르기	1차시
	체육	2학년	1학기	5.안전	9체05-08	안전사고의 종류와 방법을 이해하고 예방대 책을 조사하기	1차시
	체육	2학년	2학기	5.안전	9체05-08	안전사고의 종류와 방법을 이해하고 예방대 책을 조사하기	1차시
	한문	2학년	1학기	1-1 처음 만나는 한문	9한01-04	지사의 원리가 활용된 교통 표지판 조사하기	1차시
	한문	2학년	2학기	1-3 생활 속 한자 어휘	9한03-01	교통 안전 기사 조사하여 한자 어휘 찾기	1차시
	수학	3학년	1학기	1-4 실수의 대소관계	9수01-09	안전속도 판단하기	1차시
	수학	3학년	2학기	6-3 원주각과 그 성질	9수04-20	원주각과 원주의 관계/ 속력과 거리의 관계	1차시
	역사	3학년	1학기	1-4. 남국의 문화와 대외교류	9역07-04	삼국의 대외 교류의 양상과 그 영향을 파악 하기	1차시
	역사	3학년	2학기	5-2.사회변화와 농민의 봉기	9역11-02	세도정치 시기에 농민 봉기가 일어난 사회 경제적 배경파악하기	1차시
	영어	3학년	1학기	1 Follow Your Dream	9영03-02	장래희망 진로의 위험요소를 찾아보고 안전 한 직업 생활을 위한 방법을 생각해보기	1차시
	영어	3학년	2학기	5. The Team Behind the Team	9영-2-04	일상생활중 지켜야할 교통안전에 대해 모둠	1차시

						별로 조사하기		
	체육	3학년	1학기	5.안전	9체05-08	안전사고의 종류와 방법을 이해하고 예방대책을 조사하기	1차시	
	체육	3학년	2학기	5.안전	9체05-08	안전사고의 종류와 방법을 이해하고 예방대책을 조사하기	1차시	
	한문	3학년	1학기	2-4 나도 모르게 썼던 성어	9한03-03	성어 활용하여 교통 안전 수칙 세우기	1차시	
	한문	3학년	2학기	7-21 양심에 따른 행동	9한02-06	교통 안전 수칙 준수 성찰일지 작성하기	1차시	
생활안전 교육	과학	1학년	1학기	1-5. 대륙이동설	9과01-05	지진 대처방법 조사하기	1차시	
	과학	1학년	2학기	2-1. 여러가지 힘	9과03-04	부력을 이용하여 물에 뜰 수 있는 장치 만들기	1차시	
	수학	1학년	1학기	1-1 소인수분해	9수01-01	내가 생각하는 가장 안전한 자연수는 무엇인가?	1차시	
	수학	1학년	2학기	4-1 기본도형	9수04-01	테이블의 다리가 3개일때와 4개일때 언제가 더 안정적인지 알아보기	1차시	
	진로	1학년	1학기	1-1. 자아이해와 긍정적 자아 개념 형성	9진01-01	진로 핵심 키워드 찾기	1차시	
	진로	1학년	2학기	3-2. 직업 정보의 탐색	9진03-03	직업 체험 활동	1차시	
	체육	1학년	1학기	5.안전	9체05-08	안전사고의 종류와 방법을 이해하고 예방대책을 조사하기	1차시	
	체육	1학년	2학기	5.안전	9체05-08	안전사고의 종류와 방법을 이해하고 예방대책을 조사하기	1차시	
	과학	2학년	1학기	7.물의 가치	9과14-01	신천천 수질 검사, 물놀이 안전수칙 이해하기	1차시	
	과학	2학년	2학기	2. 전기	9과09-03	전기의 올바른 사용	1차시	
	국어	2학년	1학기	3. 담화와 의사소통	9국01-01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사례 나누기	1차시	
	국어	2학년	2학기	4. 비평적 읽기와 듣기	9국02-07	뉴스나 신문기사에서 안전사고의 사례와 예방방법 찾아보기	1차시	
	기가	2학년	1학기	2. 기술과 안전	9기가05-02	가정과 사회의 변화에 따른 안전 사항 조사	1차시	
	기가	2학년	2학기	7. 건설 기술의 창의적 문제해결	9기가04-07	건설 기술 관련 문제 이해 및 해결책 탐색	1차시	
	수학	2학년	1학기	1-1 유리수의 소수표현	9수01-06	내가 생각하는 가장 안전한 유리수는 무엇인가?	1차시	
	수학	2학년	2학기	4-1 삼각형의 성질	9수04-10	삼각형을 이용한 구조물은 왜 안전한가?	1차시	
	체육	2학년	1학기	5.안전	9체05-08	안전사고의 종류와 방법을 이해하고 예방대책을 조사하기	1차시	
	체육	2학년	2학기	5.안전	9체05-08	안전사고의 종류와 방법을 이해하고 예방대책을 조사하기	1차시	
	과학	3학년	1학기	8-1. 과학과 기술의 발달	9과24-01	일상생활 속 안전을 지키는 과학기술 알아보기	1차시	
	과학	3학년	2학기	6-2. 전기에너지	9과22-03	일상생활 속 전기제품 사용 원리 조사하기	1차시	
	기가	3학년	1학기	3. 수송 수단의 안전한 이용	9기가04-11	수송 수단의 안전한 이용방법, 사고원인 예방 대처	1차시	
	기가	3학년	2학기	1. 생명기술 시스템	9기가04-08	생명 기술 시스템 및 활용 분야 이해	1차시	
	수학	3학년	1학기	4-1 이차함수	09수03-09	포물선을 그리는 물체의 낙하 지점을 예측하여 물체를 던졌을때 위험성 인식하기	1차시	
	수학	3학년	2학기	5-3 삼각비의 값	9수04-17	삼각비를 활용한 높은 곳의 위험알기	1차시	
	체육	3학년	1학기	5.안전	9체05-08	안전사고의 종류와 방법을 이해하고 예방대책을 조사하기	1차시	
	체육	3학년	2학기	5.안전	9체05-08	안전사고의 종류와 방법을 이해하고 예방대책을 조사하기	1차시	
	약물 및 사이버중독 예방교육	과학	1학년	1학기	6-3. 상이 생기는 원리	9과06-03	사이버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생활 지침 만들기	2차시
		과학	1학년	2학기	4-1. 기체의 증발과 확산	9과04-01	가스 누출 사고의 위험성과 대처방법 조사하기	2차시
		수학	1학년	1학기	1-2. 정수와 유리수	9수01-03	수의 대소관계를 활용한 정확한 약물 사용하기	1차시
		수학	1학년	2학기	5-1 다각형	9수04-05	약물 및 사이버중독을 경고하는 문구를 어떤 도형에 넣으면 효과가 클까?	1차시

	음악	1학년	1학기	생활 속의 음악, 음악 속의 생활	9음03-01	사이버중독 예방 가사 만들기	1차시
	음악	1학년	2학기	생활 속의 음악, 음악 속의 생활	9음03-01	약물중독 예방 가사 만들기	1차시
	과학	2학년	1학기	1. 물질의 특성	9과08-04	약물의 올바른 활용	2차시
	과학	2학년	2학기	5-2. 호흡	9과12-04	흡연의 피해 이해 및 약물 오남용 예방	2차시
	기가	2학년	1학기	1. 기술과 사회	9기가05-01	기술 발달에 따른 사회 변화	1차시
	기가	2학년	2학기	2. 제조 기술 시스템	9기가04-02	제조 기술 시스템 및 생산 과정 이해	1차시
	음악	2학년	1학기	삶의 동반자, 음악	9음03-01	안전한 공연 관람 예절 배우기	1차시
	음악	2학년	2학기	삶의 동반자, 음악	9음03-01	약물중독 예방 가사 만들기	1차시
	과학	3학년	1학기	4-1. 감각 기관	9과20-01	약물이 감각기관에 미치는 영향 조사하기	2차시
	과학	3학년	2학기	5-1. 세포분열	9과21-01	약물이 생식세포분열에 미치는 영향 알아보기	2차시
	기가	3학년	1학기	5. 신재생에너지의 이해	9기가04-13	신 재생 에너지의 활용과 중요성 인식	1차시
기가	3학년	2학기	2.정보 통신 기술의 특성과 발달	9기가04-16	정보 통신 기술의 특성, 발달 과정 이해	1차시	
응급처치 교육	체육	1학년	1학기	5.안전	9체05-08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 방법과 응급처치 올바른 방법을 조사하기	1차시
	체육	1학년	2학기	5.안전	9체05-08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 방법과 응급처치 올바른 방법을 조사하기	1차시
	체육	2학년	1학기	5.안전	9체05-08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 방법과 응급처치 올바른 방법을 조사하기	1차시
	체육	2학년	2학기	5.안전	9체05-08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 방법과 응급처치 올바른 방법을 조사하기	1차시
	체육	3학년	2학기	5.안전	9체05-08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 방법과 응급처치 올바른 방법을 조사하기	1차시
	체육	3학년	2학기	5.안전	9체05-08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 방법과 응급처치 올바른 방법을 조사하기	1차시
재난안전 교육	영어	1학년	1학기	5. We are a Team	9영02-09	모둠별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크게 미친 재난을 조사해보고, 대처방안을 영어로 토론해보기	1차시
	영어	1학년	2학기	6. Save Energy, Save Earth	09영04-04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해 영향을 받은 재난의 종류와 재난이 일어났을 시 지켜야할 안전수칙 영어 포스터 만들기	1차시
	음악	1학년	1학기	생활 속의 음악, 음악 속의 생활	9음03-01	안전한 공연 관람 예절 배우기	1차시
	수학	2학년	1학기	3-1 일차함수와 그 그래프	9수03-05	지구온난화로 인한 강수량의 증가를 그래프로 그려보고 심각성 알아보기	2차시
	수학	2학년	2학기	5-4 삼각형의 무게중심	9수04-15	삼각형의 넘어지지 않고 들어올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할까?	1차시
	영어	2학년	1학기	5. Come One, Come All	9영02-02	세계 각국에 큰 영향을 미친 재난을 조사해 발표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 논의하기	1차시
	영어	2학년	2학기	7. Can I Trust It?	9영04-03	재난 대비에 관한 o,x 퀴즈 내고 모둠별로 맞춰보기	1차시
	음악	2학년	1학기	삶의 동반자, 음악	9음03-01	사이버중독 예방 가사 만들기	1차시
	수학	3학년	1학기	1-3 무리수와 유리수 구분	9수01-08	안전한 상황과 위험한 상황 구분하기	1차시
	역사	3학년	1학기	2-2.남북국의 발전과 변화	9역08-02	신라말 사회혼란의 배경을 자연재해와 연결하여 파악하기	2차시
역사	3학년	2학기	6-2. 자본주의의 발전	역 12-02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사회변화 속에서 안전의 중요성 파악하기	2차시	
직업안전 교육	진로	1학년	1학기	2-1. 변화하는 직업 세계의 이해	9진02-03	분야별 직무 능력 알아보기	1차시
	진로	1학년	2학기	3-2. 직업 정보의 탐색	9진03-04	나에게 맞는 직업 정보 탐색 활동	1차시
	기가	2학년	1학기	2. 기술과 안전	9기가05-02	가정과 사회의 변화에 따른 직업의 변화 및 안전	1차시
	기가	2학년	2학기	3. 제조 기술의 특징과 발달	9기04-03	재료의 특성과 이용 이해, 발달 전망 예측	1차시
	음악	2학년	2학기	음악 감상을 통해 만나는 역사와 문화	9음02-02	안전 캠페인 송 감상문 작성하기	1차시
	기가	3학년	1학기	4. 수송기술의 창의적 문제해결	9기가04-12	수송 기술과 관련된 문제 인식과 해결 방안 탐색	1차시
기가	3학년	2학기	4. 정보 통신 기술의 창의적 문제해결	9기가04-18	정보 통신 관련 문제 해결방안 탐색	1차시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	국어	1학년	1학기	2. 요약과 판단	9국02-03	사이버 폭력과 관련된 소설을 읽고 인물의 감정에 공감하기	2차시
	국어	1학년	2학기	2. 문학과 성찰	9국05-10	사이버 폭력과 관련된 성장 소설을 찾아 읽고 토의하기	2차시

교육	도덕	1학년	1학기	1-2 도덕은 무엇이고 왜 필요한가?	9도01-01	폭력을 예방하고 도덕적으로 살아야하는 이유 생각하기	2차시
	도덕	1학년	2학기	4-2 이웃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도덕적 자세는?	9도02-04	이웃과 폭력을 없애고 평화롭게 살기위한 자세 생각하기	2차시
	영어	1학년	1학기	1. New School, New Friends	9영02-05	나를 소중하게 대하는 법에 대해 영어 포스터 작성하기	1차시
	영어	1학년	2학기	7. My Future Dream	9영04-03	나의 소중함과 각종 폭력으로부터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영어로 토의하기	1차시
	도덕	2학년	1학기	7-1. 폭력은 왜 비도덕적인가?	9도02-07	폭력이 비도덕적인 이유 알아보기	2차시
	도덕	2학년	2학기	4-1 고통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9도04-04	고통을 대하는 자세를 알고 중요한 것 파악하기	2차시
	영어	2학년	1학기	1. Can We talk?	9영04-03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영어 포스터 만들기	1차시
	영어	2학년	2학기	2. Close to You	09영04-02	학교 친구들과 일어날 수 있는 학교폭력의 예시를 조사해보고, 사례를 영어로 발표하기	1차시
	한문	2학년	1학기	1-1 처음 만나는 한문	9한01-04	회의, 형성의 원리 활용하여 비폭력 한자 창작하기	2차시
	한문	2학년	2학기	1-3 생활 속 한자 어휘	9한03-01	비폭력 및 평화 관련 한자 어휘 조사하여 의미망 만들기	2차시
	국어	3학년	1학기	5. 주장과 토론	9국01-05	신문에서 사이버 폭력과 관련한 기사 읽고 토의하기	2차시
	국어	3학년	2학기	3. 문장과 글쓰기	9국03-10	사이버 폭력이 청소년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글을 읽고 논술하기	2차시
	영어	3학년	1학기	1 Follow Your Dream	9영03-01	외국여행중 조심해야할 것들 알아보기	1차시
	한문	3학년	1학기	3-7 교훈이 담긴 속담	9한04-01	속담 활용하여 자신의 폭력적 언행과 태도 반성하기	2차시
	한문	3학년	2학기	5-13 입을 기다리며	9한02-07	폭력 예방 오언시 짓기	2차시

나. 교직원 대상 안전교육(2023년)

구분	총 교직원 수(명)			안전관련 전문교육(15시간) 이수 대상 예정자			
	교원	직원	계 (A)	교원	직원	계 (B)	이수율 (B/A)×100
인원	26	16	42	10	4	14	33

다. 학생 및 교직원 심폐소생술 교육 이수(2023년)

교육대상 인원수(명)				교육실시 인원 수(명)				참여율(%)	
학생 (A)	교직원 수			학생 (C)	교직원 수			학생 (C/A)	교직원 (D/B)
	교원	직원	소계 (B)		교원	직원	소계 (D)		
259	26	16	42	259	26	16	42	100	100

라. 나·침·반 5분 안전교육

- 1) 나·침·반 5분 안전교육 운영 관련하여 별도 계획 수립함.
- 2) 매주 월, 수, 금(09:00~09:05) 시작과 동시에 전교생 방송 교육 및 담임교사 입장 교육을 실시함.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1주	교통안전	생활안전	여가활동 안전(등산, 물놀이, 스포츠)
2주	교통안전	생활안전	재난안전
3주	교통안전	생활안전	약물 및 사이버 중독예방
4주	교통안전	생활안전	폭력예방 및 신변안전

3) 종례시간, 생활지도, 담임 및 여유 시간을 활용한 상시 안전교육으로 위기상황 대처능력 습관화함.

월	화	수	목	금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	재난안전 응급처치	생활안전 직업안전	교통안전

3. 교육활동 안전 교육

1) 교내 활동

가) 수업시간

수업시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통해 안전하면서도 즐거운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1) 체육시간

체육수업 전에 미리 파악하고 조치할 사항과 수업시간에 지켜야 할 일을 숙지하여 지도한다.

교사 안전조치	요양호자, 신체허약자, 심장질환자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견학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에 대하여는 수업 전후에 준비 운동과 마무리 운동을 충분히 한다. 정확한 운동방법과 주의사항을 완전히 숙지시킨 후 운동을 실시하고, 단계별, 수준별로 기능을 익힐 수 있도록 지도한다. 운동 중에는 운동을 하고 있는 학생 뿐 아니라 기다리고 있는 학생들의 행동도 수시로 관찰한다. 경쟁이 과열되면 과도한 신체접촉으로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지므로 경쟁이 과열되지 않도록 분위기를 적절하게 통제한다.
학생 안전수칙	체육시간에 몸이 아프면 미리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쉰다. 개인 운동기구는 반드시 한 사람씩 이용하도록 하고 체육기구 운반은 여러 학생들이 협동하여 조심스럽게 한다. 다른 친구들의 활동 모습과 내용을 열심히 보고 익히며, 경기규칙과 질서를 잘 지키고 승부에 너무 집착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한다.

(2) 미술시간

미술시간 중 안전사고는 미술도구의 안전한 사용 방법을 중심으로 지도한다.

교사 안전조치	도구의 안전한 사용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예를 들어 지도하고 도구의 사용이 서툴거나 실수가 많은 학생을 파악하여 따로 지도한다.
학생 안전수칙	조각칼은 칼이 지나가는 방향에는 몸이나 손을 놓지 않도록 하고, 커터 칼의 경우 너무 길게 빼서 사용하지 않고 손은 칼이 지나가는 부분에 놓지 않도록 하며, 사용 후에는 칼날을 넣는다. 글루건은 노즐이 손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달구어진 접착액은 온도가 떨어지기 전까지는 맨손으로 만지지 않는다. 니퍼, 펜치, 가위는 물건을 물리는 부위에 실수로 손의 일부가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실습시간

가열 또는 전열기구, 칼 또는 날카로운 기구 사용 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지도한다.

<p>교사 안전조치</p>	<p>안전수칙을 충분히 지도하고 중요한 내용은 써서 보기 좋은 위치에 부착해 놓고, 준비된 식품재료의 안전성을 확인한다. 가스 불을 켜기 전에 가스가 새는지(냄새) 확인하고 창문을 열어 실내를 환기시킨다. 칼날이 무뎠다면 힘을 주게 되어 다칠 염려가 있으므로 적당하게 갈아졌는지 미리 확인한다.</p>
<p>학생 안전수칙</p>	<p><가열기구 다루기> 가스기구의 불을 켜는 순간 불이 붙었는지 확인하며, 가스기구 주위에는 인화물질을 가까이 놓지 않는다. 가스를 다 쓴 후에는 점화 스위치는 물론 중간밸브도 잠근다. 조리 시에는 국물이 넘쳐 불이 꺼지지 않았는지 지켜본다. 냄비를 가열 할 때, 냄비 뚜껑 및 손잡이에 화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한다.</p> <p><부엌칼, 과일칼 다루기> 재료를 썰 때는 재료를 잡고 있는 손을 칼의 뒤쪽에 놓아 베이지 않도록 주의하고 칼날은 아래쪽을 향하게 한다. 칼을 바닥에 떨어뜨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절대 칼을 들고 장난하지 않는다.</p>

(4) 과학시간

화학약품, 위험물질 사용에 대한 취급방법과 안전수칙과 알콜램프 등 가열기구 이용 시 주의 사항을 숙지토록 한다.

<p>교사 안전조치</p>	<p>과학담당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비치하고 실험용기, 시약 등에 대해 사전에 철저히 파악해 둔다. 실험실습 전 충분히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조치를 강구해 놓는다. 독성이 있거나 냄새가 좋지 않은 기체가 발생하는 실험은 후드가 있는 곳에서 하도록 하고, 후드가 없을 때는 창문을 열어 놓는다.</p>
<p>학생 안전수칙</p>	<p><시약류 취급> 실험실 기기의 작업 및 조작은 지정된 순서를 정확히 따라서 하고, 취급할 약품의 사용법과 예방책을 교사가 설명할 때까지 약품에 손대지 않는다. 약품을 사용한 후에는 제자리에 보관하고 남은 것을 다시 시약병에 넣지 않는다. 다만 많은 양을 사용하는 아세트, 에탄올, 황산, 염산, 수산화나트륨 용액, 과산화수소 용액 등은 회수하여 재사용 할 수 있다. 가연성 물질을 다룰 때는 화기를 주변에 놓지 않는다. 눈금이 새겨진 유리 기구(눈금 실린더, 뷰렛, 피펫 등)는 절대로 불로 가열해서는 안 된다. 시험관에 화학물질을 가열할 때는 마개를 열고 입구가 다른 사람의 얼굴이나 몸을 향하지 않도록 한다. 시약을 덜어낼 때는 시약의 이름을 확인한 후 깨끗한 용기에 필요한 양 만큼 덜어낸다. 지시가 없는 한, 약품의 맛을 보아서는 안 되고, 냄새를 맡고자 할 때는 얼굴을 향하여 손으로 부채질하면서 냄새를 맡아야 한다. 강산이나 강염기를 희석시킬 때는 반드시 물을 먼저 붓고 산이나 염기를 조금씩 부어가며 희석시킨다. 시약병을 실험실내에서 들고 다니지 않고 시약병이 비치된 실험대에 가서 적당량을 받아 써야 한다. 유독휘발성 액체시약은 스포이트로 옮긴다.</p> <p><가열기구 실험> 물질이 휘발성일 때는 마개를 단단히 하여 통풍이 잘되는 곳에 놓아둔다. 인화성이 큰 물질은 불 가까이 두지 않는다. 알코올램프 안의 알코올의 양은 30~80% 정도로 담아 쓰고, 알코올램프 불을 기울여 알코올램프에 불을 붙이는 일이 없도록 한다. 알코올 램프는 입으로 불어서 끄지 않고, 뚜껑을 옆에서 살며시 덮어 끈다. 잠시 후 뚜껑을 살짝 열었다가 다시 잘 덮는다.</p>

나) 휴식시간

쉬는 시간은 교사의 임장이 약해지는 반면 학생들은 긴장이 완화되면서 신체활동이 왕성해지는 시간대이므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시설물 점검과 확인 및 학생들의 생활태도 등에 대한 교육방법 등을 숙지한다.

(1) 교실, 복도, 계단, 난간

학교에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실, 복도, 계단, 난간에 대한 시설점검과 이용방법지도를 통해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

<p>교사 안전조치</p>	<p>계단, 복도 등 비상구, 비상 통로 또는 비상용 기구에 '비상'이라는 안내판을 설치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계단 난간의 높이는 90cm 이상이 되는지 확인한다. 난간은 계단참을 포함하여 각층의 계단 전체에 걸쳐서 설치하고 높이가 3.7m를 초과하여 설치하여서는 안 되며, 중간에 계단참은 가로 세로의 길이가 각각 1cm 이상 되도록 하고 불규칙 계단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복도와 계단 등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통로바닥이 물기 등의 액체 이물질로 젖어 있지 않은지 수시로 관찰하여 물기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제거토록 한다.</p>
<p>학생 안전수칙</p>	<p>반드시 우측통행을 하고, 두 세 개의 계단을 한꺼번에 오르고 계단 난간을 넘거나 타고 내려오는 등의 위험한 행동은 절대 하지 않도록 한다. 계단 및 복도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바닥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한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에는 난간을 잡고 이동하는 것이 안전하다. 여러 사람이 함께 계단을 오르내릴 때에는 앞사람과 닿지 않도록 간격을 두고 움직여야 한다. 교실이나 복도에서 공놀이나 술래잡기 놀이를 하지 않는다. 칼, 가위 등 위험한 물건으로 장난치거나 뽀족한 연필 등으로 장난을 치면 다치기 쉬우므로 조심한다. 끈이나 줄로 목을 잡아당기는 장난은 위험하므로 하지 않도록 하고, 친구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지 않는다.</p>

(2) 유리창

유리창 파손 대비 및 파손 시 조치사항 등에 대한 안전지도를 실시한다.

<p>교사 안전조치</p>	<p>추락 방지용 안전 난간과 안전대 및 안전망을 설치한다. 유리창에는 칼라(백색)필름을 부착하고 깨지면 테이핑 처리한다. 깨진 유리 교체 및 청소는 학생이 직접 하지 않도록 하고, 깨진 유리조각이나 파편 청소 시 안전 장갑을 사용한다.</p>
<p>학생 안전수칙</p>	<p>창문 밖으로 물체를 던지는 위험한 행위는 하지 않는다. 창틀에 올라가서 밖을 보거나, 잇몸을 밖으로 내밀거나 또는 창틀에 기대어 앉는 행위를 하면 떨어질 위험이 있다.</p>

(3) 책걸상

책걸상 사용방법과 파손 시 안전조치에 대해 지도한다.

<p>교사 안전조치</p>	<p>책상 모서리 부분은 라운딩 또는 충격완화 고무를 부착하는 등 충격으로 인한 타박상을 방지토록 한다. 책·걸상의 정기적 수리 및 교체, 안전도 유지를 위한 지속적 관리를 통해 책걸상 안전사고를 예방한다.</p>
<p>학생 안전수칙</p>	<p>책걸상에 걸터앉지 않고, 의자에 앉으려는 친구의 의자를 몰래 빼는 장난을 하지 않는다. 책걸상들 사이의 좁은 통로에서 뛰지 않는다.</p>

(4) 세면장, 급수대, 화장실

세면장, 급수대, 화장실 이용 방법에 대해 안전지도를 한다.

<p>교사 안전조치</p>	<p>세균에 따라 일반적인 손 세척으로는 쉽게 제거되지 않는 세균도 있다. 따라서 위생적인 손 씻기를 위해 올바른 손 씻기 6단계 방법을 익히게 지도한다. 세면장, 급수대, 화장실은 물기가 많은 곳이므로 이용에 항상 주의토록 하고, 수시로 바닥상태를 점검하여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p>
<p>학생 안전수칙</p>	<p>비누를 사용하여 손을 씻으면 세균, 먼지를 씻어내 주어 전염병의 70%를 예방할 수 있다. 세면장, 급수대, 화장실을 이용할 때는 한 줄로 서서 이용한다. 화장실 사용 후에 물을 반드시 내린다. 바닥에 물기가 있는 경우 낙상의 위험이 있으므로 항상 바닥상태에 주의토록 하고, 세면대 위에 올라가서 발을 닦으면 세면대가 파손되어 크게 다칠 수 있으므로 절대 올라가지 않도록 한다.</p>

(5) 승강기

승강기 안전진단과 올바른 탑승 지도를 실시한다.

교사 안전조치	정기적인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승강기 탑승 수칙을 지도한다.
학생 안전수칙	승강기는 몸이 불편한 친구들이 이용하도록 하고, 승강기 문에 기대거나 강제로 열지 않도록 한다. 승강기 안에서 뛰거나 장난치지 않으며, 버튼이나 스위치를 장난으로 난폭하게 다루면 안 된다. 승강기 안에 쓰레기를 버리면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승강기에 이상이 생기면 외부에 연락하고 승강기 안에서 조용히 기다린다. 승강기를 타거나 내릴 때 승강기가 정지하면 즉시 행동하지 않고 잠시 동안 내부나 외부를 살핀 후 행동한다. 화재 시에는 절대로 승강기를 타지 않고 비상계단을 이용한다. 사용중지, 고장 또는 점검 중이라는 표시가 붙은 승강기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다.

다) 점심시간

점심식사 준비와 배식, 식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또는 사고 유형을 파악하고 사전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교사 안전조치	평소에 예절교육과 함께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배식 과정에서 질서를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며 앞 사람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학생 안전수칙	<p><배식 시> 차례로 줄을 서서 서두르지 않고 배식을 받는다. 배식할 때는 장난을 치지 말고 차례를 기다린다. 식판을 옮길 때는 주변에 친구가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한다. 음식물이 바닥에 떨어지거나 흐르게 되면 미끄러워져서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조심하며, 만약 음식물을 바닥에 흘렸을 경우 친구들의 안전을 위해 바로 휴지로 닦도록 한다. 뜨거운 음식을 운반할 때에는 흘리거나 튀지 않도록 조심한다. 음식은 먹을 만큼만 알맞게 담도록 한다. 식판을 옮길 때에는 두 손으로 옮기도록 한다.</p> <p><급식도구 사용 시> 급식도구는 사용법에 맞게 바르게 사용한다. 젓가락으로 친구를 찌르는 행동을 하지 않고, 손가락과 젓가락을 구부리는 장난을 하지 않는다.</p> <p><음식을 먹을 때> 음식물은 천천히 삼키고, 입에 음식물을 넣고 말하지 않는다.</p>

라) 방과 후

방과 후에 안전사고 예방을 통해 안전하고 교육적인 방과 후 활동이 이뤄지도록 노력한다. 이를 통해 학생의 소질 계발과 취미, 특기 신장을 위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1) 청소시간

문 열기-털기-닦기-정돈하기-문 닫기와 같은 청소 순서에 따른 안전한 청소 용구 사용 방법을 지도한다.

교사 안전조치	교실 출입문 등은 가능한 미닫이문으로 교체하여 충돌, 협착 등의 사고를 예방한다. 교실바닥의 물기를 제거하고 청결을 유지토록 한다. 교실 내 액자나 선풍기 등 부착물의 낙하 방지를 점검한다. 교실청소 시 책상 및 양동이 운반 등 중량물 취급 시 가능한 2명 이상이 실시한다. 교실 내 바닥, 통로 등의 끝이나 개구부로부터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방책 등을 설치한다.
학생 안전수칙	청소 순서에 따라 청소하고, 압정이나 본드로 부착되어 있는 게시물의 먼지를 제거할 때 특히 주의한다. 청소 시간에 비치된 가구나 청소 도구로 장난치지 않는다. 화장실 등의 바닥이 미끄러운 곳에서는 뛰거나 장난치지 않는다. 청소 후에는 대걸레, 빗자루, 양동이 등 청소도구를 제자리에 정리해서 보관한다.

(2) 놀이기구 이용

놀이기구 및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놀이기구 안전수칙을 지도한다.

<p>교사 안전조치</p>	<p><철봉대, 씨름장 등 각종 체육 시설의 안전성 확보> 철봉대 평행봉 등의 적정 크기, 규격 등 구분 설치 및 용접부위 결함 유무를 확인한다. 철봉대, 평행봉 주변(15cm이상)과 씨름장(20cm이상)은 미세모래사장으로 하고 정기적으로 교체하며 모래 턱은 고품질(나무, 철 등) 사용을 금지한다. 퓌들, 녹목놀이 시 주변에 매트리스 등을 깔고 구비하여 충격을 완화하도록 한다. 축구, 핸드볼 골대 그물 등은 색상이 있는 그물을 설치하고 충격 완화를 고무, 스펀지 등으로 안전보호대를 설치한다. 회전체 기구 주위에 사람 접근 방호 장치를 설치한다.</p> <p><운동장의 청소 및 관리> 운동장 주변 파손된 하수구, 맨홀, 웅덩이 등을 신속하게 개·보수하고 위험표지판 설치 등으로 추락을 방지한다. 운동장 주변 파손된 울타리, 벽 등은 개·보수 및 교체하고 안전 난간, 안전축대를 설치한다. 나뭇가지가 놀이시설 주변에 나와 있으면 가지치기를 하여 신체 특히 눈이 다치지 않도록 한다.</p> <p><기타 놀이시설 안전 유무> 기타 학교 및 놀이시설물 구조진단 등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담장에 5mm이상의 균열(Crack)이 발생했는지 경사의 기울기 등을 확인한다.</p>
<p>학생 안전수칙</p>	<p>여름철 너무 뜨겁거나 겨울철에 얼어 있을 때에는 이용하지 않는다. 흙 묻은 손으로 얼굴이나 눈을 비비지 않는다. 손에 물건을 들고 놀이기구를 이용하지 않는다. 놀이기구에서 친구를 미는 등 위험한 놀이나 행동을 하지 않는다. 놀이기구 주변은 위험하기 때문에 놀이기구를 이용할 때 친구와 싸우지 않도록 하고, 흙이나 물건을 던지지 않는다.</p> <p>놀이기구를 이용할 때에는 정해진 계단으로 순서를 지키며 차례대로 타고 내려오도록 하고, 계단을 거꾸로 올라가지 않는다. 계단을 타고 내려온 후에는 재빨리 비켜준다.</p> <p>그네를 탈 때는 그네가 완전히 정지한 후에 타고 내리고, 친구가 타고 있는 근처에는 가지 않는다. 배를 깔고 엎드려 타거나, 두 명이 한 그네에 타지 않도록 한다. 줄을 꼬지 않고 타야 하며, 그네에서 뛰어 내리지 않는다.</p> <p>회전대가 회전하는 도중에 뛰어내리거나 뛰어오르면 관성에 의해 사고를 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회전 중에는 같이 탑승한 사람과 밀고 당기는 등의 장난을 치지 않는다. 회전대를 갑자기 고속으로 회전시키지 않도록 하고, 회전 중에 회전대를 멈추게 하려고 붙잡지 않는다. 회전대 밑으로 발이나 몸이 끼일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p> <p>수영장을 이용하는 체육활동 시 수영장 안에서 뛰거나 친구를 밀거나 장난을 치지 않도록 하고 자신의 키보다 깊은 수심에서 수영하지 않도록 주의한다.</p>

(3) 방과 후 학교

- ① 방과 후 학교는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시간을 활용하여 학생 보살핌, 청소년 보호 선도, 자기주도적 학습력 신장, 인성, 창의성, 특기 계발 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다. 강사는 현직 교원과 외부강사, 자원봉사자 등 지역사회와 가용 인적자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활용한다.
- ② 이처럼 방과 후 학교는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시간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선택에 따라 운영되기 때문에 학교의 학생에 대한 관리·감독이 상대적으로 약해지므로 학생들의 안전지도에 각별히 주의를 요한다. 이를 위해 방과 후 학교 관리자는 다음의 사항들을 이행하여야 한다.

방과 후 학교 안전관리를 위한 이행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사는 단위 수업시간을 준수하도록 한다. ○ 강사는 수강 시간동안 안전사고에 유의하고, 수시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 방과 후 학교 수업 중에 위험성이 있는 도구를 사용할 경우 사용 전 철저히 위험성을 알리고 도구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방과 후 학교 수업 후에는 바로 귀가할 수 있도록 귀가 지도를 실시한다. ○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은 수업 시작 후 바로 전화나 문자로 결석을 확인하도록 한다. ○ 강사는 사고 발생 시 즉시 대처하여 학부모와 방과 후 학교 담당교사에게 연락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 강사는 수업 중 학생들 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관찰하고 협동하고 배려하는 학습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며 생활지도에 철저를 기한다. ○ 수업이 끝나기 전 학생들의 교실 밖 출입은 삼가며, 필요시에는 반드시 허락을 받은 다음 나갈 수 있도록 한다. ○ 수업 종료 후 담당 강사는 교실 정리정돈을 하고 각 실 쓰레기통 소거 및 전기 제품 등 전원차단 등 철저히 확인하여 화재 예방에 힘쓴다. ○ 학생 관리를 위한 상담은 필요 시 교내에서 실시하며, 학교장의 허락없이 가정 방문 및 학교 밖에서의 학생 지도는 금지된다.

(4) 물놀이 안전

<물놀이 전>

- 반드시 충분한 준비 운동을 하고 구명조끼를 착용합니다.
- 식후, 배가 고플 때, 심한 운동 후에는 물놀이를 자제합니다.
- 야외 물놀이를 할 때는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 화상을 입지 않도록 합니다.
- 머리카락이 긴 사람은 묶거나 수영모자를 씩습니다.
(※ 물놀이 중에 머리카락이 목에 감길 수 있습니다.)

<물놀이 중>

- 물에 들어갈 때는 손, 발→다리→얼굴→가슴의 순서로 몸에 물을 적신 후 천천히 들어갑니다.
- 물 깊이를 알고 있는 곳에서만 물놀이를 하며, 보호자나 안전요원이 있는 곳에서 물놀이를 합니다.
- 다리에 쥐가 나면 즉시 물 밖으로 나옵니다.
- 다음의 증상이 있으면 물놀이를 중지합니다.
 - 몸이 떨리거나, 입술이 푸르고 얼굴이 당기는 증상
 - 피부에 소름이 돋을 때 등
- 위급할 때는 한쪽 팔을 최대한 높이 올리고 흔들어도움을 청합니다.
- 음식을 먹으면서 물놀이를 하지 않습니다.
- 깊은 물로 떠밀거나 물속에 오래 있기 등의장난을 치지 않도록합니다.
- 신발이나 물건이 물에 떠내려가도 혼자 건지지 말고, 주위의 어른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물놀이 후>

- 전신을 맑은 물로 씻고 양치질을 합니다.
- 물기를 잘 닦고, 머리를 완전히 말립니다.
-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작은 부상이라도 반드시 치료합니다.

2) 외부 체험 활동 안전 대책

가) 현장체험학습 사전교육 실시

- (1) 현장체험학습과 관련된 교육자료·현장정보 등을 학생들에게 미리 제공하고 사전교육 실시
- (2) 학부모 홍보를 통해 가정교육과 연계할 수 있도록 안내
- (3) 현장체험학습 실시 전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차량 및 시설 이용, 교육 프로그램 안내, 안전사고 예방교육 등을 실시
 - 현장체험학습 안전길라잡이, 청소년활동안전센터에서 제작한 청소년용 안전가이드 등 참고·활용 (www.yas.or.kr)
 - 모두의 체험학습 활용: 수학여행운영시스템 활용하여 안전교육 실시(<http://schooltrip.pen.go.kr>)에 탑재되어 있음
 - (가) 교통수단별 안전교육(버스, 선박, 항공기, 기차, 대중교통 등) 공중시설 이용 예절교육, 기타 안전 사고 예방교육
 - (나) 성범죄(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성매매 등) 예방교육
 - (다)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유해 물품을 절대 휴대하지 않도록 교육
 - (라) 숙소나 체험시설에서의 상황발생 대비 행동요령(대피로 확인, 신속대피 등) 교육
 - (마) 1일형 현장체험학습 운영 시 공중도덕(버스 및 지하철 등에서 정숙)을 준수하도록 교육
 - 출근시간 등을 고려하여 운영
- (4) 보호를 필요로 하는 학생이 활동 참가 시 수련시설 및 위탁업체에 명단과 신체 허약 정도 등을 통보하여 안전지도 대책을 수립
- (5) 인솔 및 지도교사는 담당 학생 중 신체허약자 또는 교육활동 운영상 특별한 보호를 요하는 학생을 사전에 파악하여 특별 관리
- (6) 학교장은 인솔 및 지도교사에게 유사시에 대비하여 응급처치 요령, 안전지도 요령, 비상탈출 방법 등

에 대한 사전연수 실시

- (7) 현장체험학습 과정에서의 이동 수단별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하되, 필요시 안전전문가를 초청하여 연수
 - ※ 안전전문가 : 화재보험협회, 인명구조협회, 소방서, 소방안전협회 등 인적자원 활용
- (8) 정부 재난 안전정보 포털 앱(안전디딤돌)을 교사·학생이 설치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
- (9) 우천, 폭염 및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대체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계획 수립

나) 미참가 학생 지도계획 수립 철저 및 지도

- (1)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불참하는 학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함
- (2) 미참가 학생 지도 계획을 철저히 수립·지도하여 학습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 미참가 학생 대상 별도 교육과정 운영(단, 학부모 동반 체험학습 시 동반체험학습계획에 준함.)
 - 미참가 학생 지도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불참자로 결석처리 하여서는 안 됨.
- (3) 미참가 학생이 잔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을 경우 출석으로 처리하고 자율활동(행사활동)영역에는 기록하지 않음.

다) 현장체험학습 (사전)안전교육

- (1) 교육프로그램 담당교사는 사전에 준비된 안전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을 교육
 - 학교 자체계획 또는 수련기관 및 위탁업체와 협의를 통해 수학여행·수련활동 등 현장체험학습의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자율성과 창의성을 기를 수 있는 학생자치활동 중심의 프로그램 권장
- (2) 현장체험학습 출발 당일 학생 건강 상태 확인
- (3) 수학여행 시 인솔자는 학급당 2명 이상 확보를 권장하되, 학교 여건에 따라 교직원, 학부모, 자원봉사자, 안전요원 등을 활용
 - ※ 인솔자는 인솔 교직원, 학부모, 자원봉사자, 안전요원 등을 포함하는 총 인원수
- (4)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 중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는 청소년지도사·문화해설사·큐레이터 등 전문교육인에 위탁하여 운영
 - 위탁교육 시에도 인솔·지도교사, 안전요원은 반드시 임장하여 체험학습 상황에 맞는 임장교육활동 실시
 - 인솔·지도교사는 교육활동 현장에서 교육내용·안전문제·학생호응도 등을 관찰하고, 안전사고 등 돌발 상황에 대응
 - ※ 위탁교육 중 인솔·지도교사의 교육현장 무단이탈 금지
- (5) 비상시에 대비한 상비약품을 준비 및 소지하고, 이동·체험활동장소의 각종시설 등에 대해 안전점검 실시
- (6) 이동 또는 체험활동 중 상황별로 적합한 생활지도 및 학생 안전교육 매뉴얼을 활용하여 안전교육 실시
 - 특히 선박·항공 이용 시 구명조끼 착용 및 비상 탈출 방법 교육
 - ※ 비상 신호의 위치, 구명기구의 비치장소, 피난요령, 구명기구 사용법 등을 의무적으로 여객에게 출항 후 1시간 이내 안내(선원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 업체에서의 안전교육 실시 의무가 있음에도,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인솔자는 이행을 요구
 - 대중교통 이용 시 사전 안전교육(귀가 안전교육 포함) 및 교통예절 교육 실시
 - ※ 이동시 사전 모둠 편성(2명 이상)을 권장하고, 가급적 출퇴근시간 등의 혼잡 시간대를 피하여 이동
- (7) 해양 수상 활동, 갯벌체험, 산행, 캠핑(야영), 전시·공연 관람, 겨울철 야외활동 계획 시 사전 안전교육 실시 확인

해양 수상 활동 사전 확인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경찰서장, 시·군·구에 등록 업체 여부(「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 ○ 인명구조요원 및 래프팅가이드의 적정 배치 여부(「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 ○ 학생 교육 시 활용할 수상레저기구(「수상레저안전법」제2조) 등의 등록여부 확인 ○ 인증 프로그램 수련활동 여부(청소년활동진흥법 제35조)

- (8) 식중독과 같은 집단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위생과 안전에 문제가 없는 곳 선정
 - ※ 학교장은 사전에 관할 시·군·구(안전 및 급식위생 담당 부서)에 실시 기간, 실시 장소(급식 장소)를 포함한 일정을 통보하고 위생·안전 점검 결과조회 공문 요청
 - ※ 소규모 현장체험학습 운영으로 소형 일반음식점을 이용함으로써, 해당 시·군·구의 인력 운용상 위생 점검이 어려운 경우 음식위생에 대한 철저한 현장 확인 후 섭취토록 지도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음.
- 도시락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위생안전이 검증된 업체 이용
- 동일원인(동일음식)으로 추정되는 설사 등 유사증세 환자가 2명 이상 동시 발생할 경우 치료 조치를 한 후 인솔책임자는 즉시 학교장(교육청)에게 보고

3) 학교 안전 관련 학부모 연계

학교장은 학기 초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다음 사항들을 학부모에게 안내하여 학교안전 관련 인식 개선과 적극적인 참여 유도

- 가) 연간 안전관리계획 통지
- 나) 각종 안전 업무 관련 학부모 자원봉사자 모집
 - 학부모총회를 통해 재학생 학부모를 중심으로 한 학부모폴리스, 학교급식소위원회 참여 학부모 선정 및 교육 후 연중 상시 활동
- 다) 건강 이상 학생 학교 통보
- 라) 담임교사를 통한 안전사고 보상제도 통지 실시 등(관련 사항 가정통신문 배부 및 학급 게시)

마. 안전사고 관리 및 재난 대응

1) 안전사고 관리 지침

가) 응급환자 관리 계획

(1) 기본 방침

학교 내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 및 후송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응급환자 후송 및 치료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함.

(2) 학교 내 응급환자 관리 계획(근거: 교육부 응급의료 관리체계 매뉴얼)

신고 체계	최초발견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담임(교과)교사 ▶ 학부모, 교감 ▶ 교장 보건교사 ▶ 응급처치, 교감 ▶ 교장 	
환자 이송	위급하지는 않으나 병원치료가 필요할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염좌, 단순골절, 단순외상 등 - 학부모에게 인계함을 원칙으로 함 - 학부모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올 수 없는 경우 담임교사 또는 학사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보건교사나 수업이 없는 교사가 후송한다. - 보건교사는 발생 할 수 있는 또 다른 응급환자를 위하여 가능하면 교내에 대기한다. 	위급하거나 위독할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도폐쇄, 호흡곤란, 의식이 없을 때 등 - 보건교사 및 담임교사 동행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실이나 운동장에서 위중한 응급환자가 발생한 경우는 무리하게 보건실로 옮기지 말고 보건교사를 현장으로 부른다. - 체육활동 등으로 환자가 발생한 경우 학생을 보건실로 혼자 보내지 말고 가급적 담당교사 또는 환자를 도와줄 학생을 보건실까지 동행하게 한다. - 학생 간 싸워서 다쳤을 경우, 아주 경미한 부상을 제외하고는 병원에서 이상 유무를 확인해 보는 것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위해서도 안전하다. 	

(3) 보건교사 부재 시 응급환자 관리

보건실 업무대행자	응급함 위치	역할
체육교사	학생체육안전부실	- 보건교사 부재(출장 등) 시 응급함 관리 등 보건실 업무를 대행
행정실무사	3층 교무실	

2) 재난 대응 지침

가) 자연재난

재난의 종류	상황 및 단계별 조치 사항
황사 미세먼지	<p>1단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황사·미세먼지 대비 안전계획 수립 ○ 황사·미세먼지 예·경보 및 기상 특보 기준 숙지 ○ 황사·미세먼지 대응 건강관리 및 행동요령 교육 ▶ 학생·학부모 대상 가정통신문 발송 및 보건 교육 시행, 홍보영상, 리플릿, 교내방송 등 활용 ▶ 마스크 착용 및 귀가 후 얼굴·손 씻기, 외출 자제, 수분 섭취 등 행동요령 안내 ○ 야외수업, 현장체험학습 등에 대한 일정 조정 검토 ○ 호흡기 질환 등 민감군 학생 파악 및 관리대책 사전 점검 ▶ 간이 의료기기 및 상비약 준비 ○ 시설 사전 점검(학교 급식 위생 관리 및 창문 밀폐 여부) ○ 미세먼지 당일 '나쁨' 이상 시 실외수업 자제
	<p>2단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황사·미세먼지 담당자는 예·경보 상황 수시 확인 ○ 비상상황(인명피해) 발생 시 보고 철저(교육청, 소방서) ▶ 피해 내용 / 현재 학교 조치 사항 / 향후 계획 등 ○ 황사·미세먼지 발생 대비 학생 행동 요령 교육 ▶ 홍보영상, 리플릿, 교내 방송 등 활용 ○ 실외수업 단축 또는 금지 ○ 학교장은 등하교시간 조정을 검토하고, 등하교시간 조정을 결정하는 즉시 학부모에게 안내 ▶ 등하교시간 조정 또는 휴업 결정 시 돌봄교실 및 (휴업 시) 휴업대체프로그램 운영여부를 함께 결정하여 해당사항을 학부모에게 안내하고 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에 보고 ※ 미세먼지 주의보에도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학교장이 휴업 결정 가능 ※ 시·도교육청이 등하교시간 조정 및 휴업을 결정할 수 있음 ▶ 실외·현장체험학습은 실내 학습활동으로 대체 ○ 학교 시설 점검 ▶ 학교 급식 관련 위생관리 점검·강화(식재료 세척, 조리 시 위생 철저) ○ 생활 지도 ▶ 물을 자주 마시고 청결을 유지한다. ※ 비누를 이용하여 30초 이상 손 씻기 지도 ▶ 학생들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점검하며, 이상 징후 발견 즉시 응급조치 실시 ▶ 실내공기질 관리(창문닫기, 물걸레질 청소, 공기청정기 가동 등) ○ 호흡기 질환 등 민감군 및 고위험군 학생 관리대책 이행
	<p>3단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황사·미세먼지 담당자는 예·경보 상황 수시 확인 ○ 황사·미세먼지 발생 대비 학생 행동 요령 교육 ▶ 홍보영상, 리플릿, 교내 방송 등 활용 ○ 황사·미세먼지 관련 질환자를 파악하고 특별관리(조기귀가, 진료) ○ 실외수업 단축 또는 금지 ○ 학교장은 기상예보, 기상청 문의결과, 학교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사운영 조정 여부를 검토하고 결정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미세먼지경보> 학교장은 등하교시간 조정을 적극검토하고 휴업을 검토</p> <p><황사경보> 학교장은 휴업을 적극검토</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하교시간조정 또는 휴업 결정 시 돌봄교실 및 (휴업 시) 휴업대체프로그램 운영여부를 함께 결정하여 해당사항을 학부모에게 안내하고 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에 보고 ※ 시·도교육청이 등하교시간 조정 및 휴업을 결정할 수 있음 ○ 재난으로 인한 임시휴업 시에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휴업대체프로그램 운영을 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제조건: 학생의 안전을 위해 등·하교 시 학부모(대리인)이 동행 ※ 단, 재해지역 및 학교상황 등을 고려, 학교 내 안전보장이 어려운 경우와 학교의 모든 기능이 정지되는 휴교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미운영 ○ 호흡기 질환 등 민감군 및 고위험군 학생 관리대책 이행
	4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내외 방역 및 청소 실시, 실내 공기 환기, 오염된 물품 세척 ○ 피해 학생 및 교직원 상황 파악 및 사후 조치 ▶ 감기, 안질환, 가려움증 등의 증상을 가진 학생은 쉬게 하거나 조기 귀가 조치 ○ 전염병 대비 방역 및 청소 실시 ○ 조치결과 보고
	1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염 대비 안전계획 수립 ▶ 시설 사전 점검 : 급식 관련 위생, 냉방, 전기 점검 및 실내 직사광선 차단 ▶ 폭염 대비 응급처치 물품 구비 : 생리식염수, 얼음팩, 체온계, 비상 구급품 등 ○ 폭염 대비 건강관리 및 행동 요령 교육 ▶ 폭염 대비 3대 건강 수칙 안내 ※ 물 자주 마시기 / 시원하게 지내기 / 더운 시간대에 휴식하기 ○ 비상연락망 점검 및 정비 ▶ 학생, 학부모, 교육청, 교직원, 주민자치센터, 시·군·구청, 소방서, 경찰서 등
폭염	2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상황에 대비한 비상연락망 확인 ▶ 교내 및 유관기관(주민자치센터, 소방서, 경찰서 등) 연락망 ○ 비상상황(인명피해) 발생 시 상황 보고 및 신고 절차(교육청, 소방서) ▶ 피해 내용 / 현재 학교 조치 사항 / 향후 계획 등 ○ 학생 안전조치 ▶ 체육활동, 쉬는 시간 및 점심시간의 실외·야외활동 자제 ▶ 단축수업 검토 / 교육청 또는 학교 재량으로 결정된 사항은 학생 및 학부모에게 신속히 통보 ▶ 수시로 수분을 섭취, 휴식을 취하게 함 ▶ 이상 징후 발견 시 즉시 응급조치 실시 ○ 학교 시설 점검 ▶ 학교 급식(식자재, 조리기구, 조리사의 청결 등) 및 매점 위생관리 강화, 점검자는 개선·보완점을 파악하여 향후 개선결과 점검 ▶ 냉방기기 점검(가동 및 청결 상태) ▶ 커튼으로 직사광선 차단 ▶ 실내 적정온도 유지(26~28℃)
	3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안전 조치 ▶ 휴업 조치 검토 / 교육청 또는 학교 재량으로 결정된 사항은 학생 및 학부모에게 신속히 통보 ※ 학교 재량으로 휴업 시, 교육청에 보고 ▶ 체육활동 등 실외 및 야외활동 금지 ○ 학교 시설 재점검 ▶ 학교 급식 및 매점 식중독 예방 위생 재점검 ▶ 냉방기기 점검(가동 및 청결 상태) ○ 피해 학생 및 교직원 파악 ▶ 119 신고 및 응급조치, 유관기관에 관련 사항 보고 ▶ 비상연락체계 유지, 보호자에게 관련 사항 전파
	1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연락망 점검 및 정비 ▶ 학생, 학부모, 교육청, 교직원, 주민자치센터, 시·군·구청, 소방서, 경찰서 등 ○ 방재물자 구비 상태 점검 / 확보 ▶ 라디오, 비상조명기구, 응급약품, 확성기, 경광봉, 양수기, 모래주머니, 로프, 테이프 등 (학교의 특성 고려 구비) ○ 안전점검반 운영을 통한 옹벽, 경사지 등 취약지역 및 배수시설 사전 점검 및 표시 ○ 여름철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 ▶ 붕괴될 우려가 있는 비탈면은 천막으로 덮어 붕괴 방지 ▶ 노후 되거나 기울어진 담장, 축대 등은 보수, 보강 ▶ 건물 주변의 교내 수목 가지치기 실시 ▶ 금이 가거나 깨진 유리창 교체 ▶ 교내 배수, 누수 상황 파악
태풍 집중호우	2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장은 학사운영조정여부를 검토하고 결정

	<div data-bbox="406 174 1417 271"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호우주의보> 학교장은 등·하교시간 조정을 검토 <태풍주의보> 학교장은 등·하교시간 조정을 적극검토</p> </div> <p>※ 주의보단계에서도,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학교장이 휴업결정 가능</p> <p>▶ 등·하교시간조정 또는 휴업 결정 시 돌봄교실 및 (휴업 시) 휴업대체프로그램 운영여부를 함께 결정하여 해당사항을 학부모에게 안내하고 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에 보고</p> <p>※ 시·도교육청이 등·하교시간 조정 및 휴업을 결정할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상황(인명피해) 발생 시 상황 보고 및 신고 철저(교육청, 소방서) ▶ 피해 내용 / 현재 학교 조치 사항 / 향후 계획 등 ○ 강풍으로 날아갈 수 있는 시설물은 견고하게 고정하거나 제거 ○ 물에 떠내려갈 수 있는 물건은 실내로 이동조치 ○ 면적이 큰 창문에는 테이프, 신문지 등 부착, 파손 대비 ○ 침수가 예상되는 저층 건물 내의 중요 물품은 상부로 이동 ○ 침수 위험 지구에 사전에 모래주머니 적재 ○ 붕괴 위험 지구, 균열이 있는 옹벽 출입 통제 및 접근금지 표시 ○ 이재민 수용 등 유관기관 협조 사항 확인 <p>○ 학교장은 기상예보, 기상청 문의결과, 학교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사운영조정여부를 검토하고 결정</p> <div data-bbox="406 786 1417 949"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호우경보> 학교장은 등·하교시간 조정을 적극검토, 휴업을 검토 <예상 강수량 250mm 이상 예보> 학교장은 휴업을 적극검토 <태풍경보> 학교장은 등·하교시간 조정 및 휴업을 적극검토 <태풍경보 발령, 태풍이 해당 지역을 통과> 학교장은 휴업을 적극검토</p> </div> <p>▶ 등·하교시간조정 또는 휴업 결정 시 돌봄교실 및 (휴업 시) 휴업대체프로그램 운영여부를 함께 결정하여 해당사항을 학부모에게 안내하고 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에 보고</p> <p>※ 시·도교육청이 등·하교시간 조정 및 휴업을 결정할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으로 인한 임시휴업 시에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휴업대체프로그램 운영을 권장 - 전제조건: 학생의 안전을 위해, 등·하교 시 학부모(대리인)이 동행 ※ 단, 재해지역 및 학교상황 등을 고려, 학교 내 안전보장이 어려운 경우와 학교의 모든 기능이 정지되는 휴교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미운영 ▶ 수업 시 실시간대 안전조치 시행 ▶ 기상방송을 청취하여 기상상태 파악 ▶ 상황을 고려하여 비상근무 실시(학교 자체 기준에 따름) ▶ 교실 창문이 심하게 흔들려 파손 우려 시 학생들을 교실에서 안전한 공간(체육관, 강당 등)으로 대피 시킴 ▶ 교내 위험지역 인근 접근 통제 ▶ 하천 부근에 위치한 학교는 통제소의 홍수예보에 따라 하천의 범람여부 수시 파악 ▶ 통학로 및 거주지가 하천 등 침수위험지역인 학생들에 대한 개별 안전 조치 강구 ○ 상황 악화로 학교가 위험하다고 판단 시 안전하게 대피 실시 ▶ 대피 전 소방서, 교육청 등 유관기관에 학교상황 전파 ▶ 대피 장소 통보 등 협업 ▶ 대피 전 안전한 대피 경로 확인(선발대 운영) ▶ 대피 전 유의사항 등 안전교육 시행 ▶ 대피 전·후 출석부(비상연락망)를 통한 인원 확인 ▶ 지정된 대피 장소 도착 시 유관기관에 통보 ○인원 및 시설 피해 발생 시 후속조치 시행 ▶ 119 신고 및 부상자 응급조치 ▶ 피해 인원 후송조치 시 직원 파견 등을 통한 연락체계 유지 ▶ 보호자에게 상황 전파 ▶ 교육청 등 유관기관에 피해 상황 보고 ※ 심각한 피해발생 시 주민센터 신고 ▶ 필요 시, 피해 발생 지역에 접근금지 라인 설치 ▶ 전기, 가스, 수도 등 기간 시설 피해 발생 시 전문기관 통보 ▶ 침수된 곳은 펌프 등으로 배수 작업 실시
3단계	<p>○ 침수된 부분은 완전히 배수시킨 후 복구대책 마련</p>
4단계	<p>○ 침수된 부분은 완전히 배수시킨 후 복구대책 마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구 작업은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반드시 2인 이상 실시 ○ 전염병 예방을 위해 물이 빠진 후 교내 방역작업 실시
지진	1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진 발생 직후 머리 보호 및 책상 아래로 대피 지시 ▶ 손, 책,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하거나 책상 아래로 대피 ▶ 출입문 개방 및 각 학급의 전원 차단(주간) ▶ 흔들림 후, 화재 등 2차 재난 방지(약품·가스·전열기 차단) ※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길어야 1~2분 정도
	2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흔들림이 멈춘 후 지정된 대피경로를 따라 신속한 대피 지시 ▶ 전교생 대피 지시(방송, 타종, 음성, 메가폰, 호루라기 이용) ▶ 인솔 교사 통제 하에 머리를 보호한 상태로 신속하게 정해진 대피경로를 따라 이동 지시 ※ 이동 중 유리파편 등에 주의하며, 다른 반과 섞이지 않도록 함 ▶ 학교 건물에서 신속하게 벗어나 운동장이나 넓은 공간으로 대피 ※ 장애학생은 사전에 지정된 특수교사 또는 재난대응반 구성원이 동행 대피 ▶ 인솔 교사는 대피 장소 학생 질서 유지와 불안증세를 호소하는 학생 대응
	3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장(부재 시 : 상위직급순) 주재로 초동 대처 및 향후 대책 결정 ※ 긴급대피 완료 후 ① 초동 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전원 대피여부 파악 ▶ 학생 안전(장애학생 포함) 상태 파악(피해학생 여부 등) ▶ 붕괴로 인해 갇힌 경우, 의식 확인 및 선부른 구조 금지 ※ 인명 피해 시 즉시 119 신고 ▶ 지진 발생으로 인한 피해 상황 파악(건물 손상 여부 등) ▶ 지진 규모, 진앙 확인(기상청 홈페이지·안전디딤돌 앱) ② 향후 대책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 진행 여부 : 정상 수업 운영, 운동장 대기, 학생 귀가조치 ▶ 귀가 시 학생 안전대책 : 보호자 인계 및 연락 방안(전화, 문자, 홈페이지 등) ▶ 학부모 연락 부재 시 학생 조치 사항 결정(교내 안전구역 대기, 인솔 교사 직접 귀가 인솔 등) ▶ 운동장 개방(지자체 협력) ▶ 학교 재난대응반 운영사항 결정 ※ 여진 및 시설 점검 후 안전이 확보된 경우만 정상 수업 실시 ※ 대책 결정 근거 : 국민안전처 및 기상청, 교육청, 지자체, 언론 등을 통한 지진 상황모니터링 결과를 종합하여 판단
	4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에 대한 안전조치 및 조치사항 전파 ▶ 정상 수업 여부 전파(보호자 SNS 전파) ※ 통신두절 시, 보호자 불안 최소화를 위해 학생들의 운동장대기 지속, 통신장애 복구 후 SNS 및 홈페이지 공지 ▶ 귀가 조치는 명확한 안전확보가 가능할 경우에만 실시하고, 학생인계절차 준수(인솔 교사 대기) ※ 학교급(유, 초, 중등), 수업 상황(주·야간), 보호자 인계방법 등 고려 ① 피해학생 후송 시 담당교사 동행 및 치료병원, 치료 상황 관련 수시 보고 (보고자: 학교안전책임관) ② 대피장소(운동장 또는 넓은 공터) 안전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임 교사 및 인솔 교사 지도를 통한 학생 보호 ③ 불안증세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진행 상황 안내를 통한 학생 동요 방지 교육 ▶ 불안증 호소 학생에 대한 선조치(상담교사 인계 등) 실시 ※ 필요 시 관할 교육청 Wee센터 협조 요청 ④ 장애학생 안전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별 여건에 맞춘 장애학생 보호 관리 ▶ 수시로 학생 상태 확인 및 보호자 연락 ▶ 특히, 정서·심리적 안정이 필요한 학생 수시 확인 및 점검
	5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직원, 학생 상태 파악 및 피해 상황 보고(교육청) ▶ 인명피해 : 신체 피해, 불안 호소자 신고 및 이송 ▶ 시설피해 : 건물, 수도, 전기, 통신망 이상 여부 확인 ※ 피해가 심각한 경우, 주민센터 신고 ▶ 화재 발생 여부 확인 및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급 상황 시 교직원 간 연락체계 구축 ▶ 사건, 결정, 행동에 대한 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 대처 지속적 실시 ▶ 재난 종료 시까지 학생 안전 관리 ▶ 여진에 의한 추가피해 대비 철저
	6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일지 작성 및 대응결과, 특이사항 보고
대설·한파	1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붕괴우려시설, PEB·아치 패널 체육관시설 안전점검 ○ 붕괴우려시설, PEB·아치 패널 체육관시설 지붕 제설 계획 수립 및 제설장비 비치 ○ 대설 대비 학생 행동 요령 교육 ○ 비상연락망 점검 및 정비 ▶ 학생, 학부모, 교육청, 교직원, 주민자치센터, 시·군·구청, 소방서, 경찰서 등
	2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장은 통학로 사정 등을 감안하여 등하교시간 조정을 검토 ※ 대설주의보에도,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학교장이 휴업결정 가능 ▶ 등하교시간조정 또는 휴업 결정 시 돌봄교실 및 (휴업 시) 휴업대체프로그램 운영여부를 함께 결정하여 해당사항을 학부모에게 안내하고 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에 보고 ※ 시·도교육청이 등하교시간 조정 및 휴업을 결정할 수 있음 ○ 재난으로 인한 임시휴업 시에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휴업대체프로그램운영을 권장 - 전제조건: 학생의 안전을 위해, 등·하교 시 학부모(대리인)이 동행 ※ 단, 재해지역 및 학교상황 등을 고려, 학교 내 안전보장이 어려운 경우와 학교의 모든 기능이 정지되는 휴교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미운영 ○ 비상상황(인명피해) 발생 시 상황 보고 철저(교육청, 소방서) ▶ 피해 내용 / 현재 학교 조치 사항 / 향후 계획 등 ○ 재난방송을 통해 대설 예보·경보 청취 ○ 대설 대비 학생 행동 요령 교육 ○ 제설 장비·인력·자재(염화칼슘, 모래, 소금) 점검 ○ 학교 내 취약요인 점검을 위한 안전점검반 편성·운영 ○ 학교 내 위험지역(붕괴, 눈사태 등) 지정 및 표시 ○ 출입구에 흙털이 발판 및 미끄럼방지 매트 설치
	3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장은 기상예보, 기상청 문의결과, 통학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사운영조정여부를 검토하고 결정 ▶ 등하교시간조정 또는 휴업 결정 시 돌봄교실 및 (휴업 시) 휴업대체프로그램 운영여부를 함께 결정하여 해당사항을 학부모에게 안내하고 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에 보고 ※ 시·도교육청이 등하교시간 조정 및 휴업을 결정할 수 있음 ○ 재난으로 인한 임시휴업 시에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휴업대체프로그램 운영을 권장 - 전제조건: 학생의 안전을 위해, 등·하교 시 학부모(대리인)이 동행 ※ 단, 재해지역 및 학교상황 등을 고려, 학교 내 안전보장이 어려운 경우와 학교의 모든 기능이 정지되는 휴교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미운영 ○ 대설 대비 학생 행동요령 교육 ○ 학교 입구, 출입구, 계단 제설작업(염화칼슘, 모래 살포) 실시 ○ 등·하교 시 위험 상황(통학로 소실, 교통 두절 등) 확인 및 대응조치(교육, 학부모 연락, 이동안전 조치) 실시 ○ 비상상황(인명피해) 발생 시 상황 보고 철저(교육청, 소방서) ▶ 피해 내용 / 현재 학교 조치 사항 / 향후 계획 등 ○ 출입구에 흙털이 발판 및 미끄럼방지 매트 설치
	4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실 내부 적정온도 유지(18~20℃) ○ 한파특보로 인해 등교에 지장이 있을 경우, 등교 시간 조정을 통해 학생 안전 조치 실시 ※ 등교 시간 조정 시 학생 및 학부모에게 신속히 통보하고 교육청에 즉시 보고 ○ 비상상황(인명피해) 발생 시 상황 보고 철저(교육청, 소방서) ▶ 피해 내용 / 현재 학교 조치 사항 / 향후 계획

나) 사회재난

재난의 종류		상황 및 단계별 조치 사항
화재	1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경보음이 울리면 담당자는 화재 발생 위치를 확인하고 즉시 안내방송 실시

		※ 위치 확인 : 화재수신반 확인 또는 육안 확인
	2단계	○ 119에 신고하며, 가능하면 벨이 울린 지점에 접근하여 화재 발생 여부 파악 후 신고 ▶ 학교 주소, 화재 진행 정도, 부상자 상황 등 신고
	3단계	○ 전교생에게 대피 지시(교내 방송 활용) ▶ 대피 경로의 안전 확보
	4단계	○ 학생 인원 파악 후 대피 못한 학생 확인 ▶ 부상자 확인 후 응급조치, 의료기관 등에 연락 ▶ 보호자에게 연락, 학생들의 안정
	5단계	○ 피해 상황 파악(인원, 시설 등) ▶ 정보 수집, 교육청에 보고 ▶ 외부기관 등과 협조체제 유지 ▶ 교사 밖 대피 장소에서 안전한 학생 관리 ▶ 보호자에게 연락 후 학생 인계 조치
화학물질 유출사고	1단계	○ 학교에 보유한 화학물질의 종류, 보관장소, 공급업체, 비상연락처 등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관 ○ 보관 중인 화학물질에 대해 월 2회 이상 상태를 점검·기록 ○ 교내·외에 화학물질 위험상황 발생 시 경보전달 체계 마련 ○ 오염 제거를 위한 장비와 개인보호장구의 보관장소 및 수량 관리 ○ 학생 및 교직원 대상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 비상대피로, 대피 장소 및 비상사태 발생 시의 대응을 위한 비상조치계획을 수립(학생 비상대피계획 수립 포함)
	2단계	○ 119와 112에 전화를 걸어 사고 발생을 통보 ○ 교내·외 신속하게 경보를 전파한 후, 상황에 따라 학생들의 교실 입실 또는 대피를 유도 ▶ 외부 공기와 통하는 설비(에어컨 등의 작동 차단 ▶ 차량을 이용하여 대피 할 경우 교육청 및 지자체의 지원 차량 이동 경로와 시간 확인 ▶ TV, 라디오를 확인하고, 재난대응기관(소방서, 지자체)과 연락하여 현재 상황을 파악 ▶ 학생 비상대피계획 점검·확인
	3단계	○ 학생 대피 인원을 확인·점검하고 관계기관에 통보 ○ 학생 비상대피계획에 따라 대피 지시 ○ 대피 후 학생 인원 파악하고, 학교에서 교육 활동이 어려운 경우 보호자에게 연락 후 학생 인계조치 ○ 인원 및 시설 피해 현황을 파악하여 보고
방사능 재난	1단계	○ 방사선 청색·적색 비상 발령 시, 민방위경보, 텔레비전, 라디오, 차량가두방송, 국민안전처 재난문자 등을 통해 방사선 비상 상황 접수 ※ 백색 비상에는 정상 일과 수행(상황 통보 없음)
	2단계	○ 실내 대피 통보 시 ▶ 현관문과 모든 창문을 닫음 ▶ 온풍기, 에어컨, 환풍기를 끄 ▶ TV나 라디오를 청취하여 당국의 지시에 따름 ※ 실내 대피 후 반드시 인원 파악 ○ 안전지역(구호소) 대피 통보 시 ▶ 모든 문과 창문을 잠금 ▶ 화재 예방을 위해 전기, 가스, 보일러, 수도를 잠금 ▶ 학교 부근에 위치한 집결지로 이동한 후 지자체 비상대응요원의 지시에 따라 제공 차량 또는, 도보 등으로 질서 있게 안전지역(구호소 등)으로 이동 ▶ 구호소 도착 후에는 빠짐없이 이재민 등록 실시(이산가족 찾기) ※ 반드시 출석부를 지참하여 각 단계별로 인원 파악
	3단계	○ TV, 라디오, 인터넷 등을 적극 활용하여 향후 행동 요령 숙지 ○ 교육청 등에 상황 보고 및 접수 ○ 실내 대피 시 학생 행동 요령 교육 ○ 인터넷, 휴대전화 등 통신이 작동되지 않아도 당황하지 말고 TV 등으로 전달되는 지시에 따름
해양사고	1단계	○ 선박에 승·하선하는 학생의 인원 및 명단을 확인 ○ 객실을 배정받으면 비상 시 대피 통로를 따라 이동하며, 비상탈출교육 실시 ○ 배정받은 객실을 담당하는 승무원의 얼굴과 이름, 연락처, 인터폰의 위치를 파악
	2단계	○ 객실에 갇힐 경우를 대비하여 탈출 방법을 미리 생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과 같은 상황이면 주저하지 말고 승무원에게 알리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안내방송을 듣고 승무원의 지시에 따름 ▶ 큰 소리가 나거나 폭발음, 강한 충격을 느꼈을 때 ▶ 원인을 알 수 없는 탄 냄새가 났을 때 ▶ 선박이 갑작스럽게 기울어 제자리로 돌아오지 못할 때 ▶ 갑작스런 정전이나 엔진이 멈춘 뒤 오랫동안 안내방송이 없을 때 ○ 화재 발생 시 소화기 등을 통해 초기 진화 실시 ○ 비상상황 발생 시 승무원 및 해양경비안전본부직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직접 얻은 정보를 신뢰 ▶ 학생 명단을 통해 인원 파악 실시 등 안전조치 실시 ○ 결코 근거 없는 소문이나 유언비어를 믿고 선불리 행동하지 않음 ○ 탈출 시에는 신체 보존 유지를 위해 가지고 온 옷을 모두 착용하도록 지시 ▶ 승무원의 지시에 따라 구명조끼가 있는 위치를 파악하고 구명조끼 착용
--	--	---

다) 기타재난

(1) 응급처치

(가) 응급처치의 정의

① 응급처치의 개념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응급상황이 발생한 후 응급의료기관에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기 전까지 행해지는 즉각적이고 임시적인 처치로, 가슴압박과 인공호흡, 기타 생명의 위협이나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이에 해당한다.

② 응급처치의 중요성

구조자의 신속하고 정확한 응급처치는 환자의 삶과 죽음, 회복기간, 장애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나) 응급처치 시 주의사항

- ① 처치자 자신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확보한다.
- ② 응급 상황일 때는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연락한다.
- ③ 함부로 물이나 음식물, 약을 먹이지 않는다.
- ④ 환자에 대한 생사의 판정을 하지 않는다.
- ⑤ 환자의 몸에서 나온 구토물이나 혈액 등이 자신의 몸에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한다.
- ⑥ 환자를 안전한 지역으로 옮기되, 이로 인해 2차 손상이 우려될 경우에는 옮기지 않는다.
- ⑦ 어디까지나 응급처치로 그치고 전문 의료인의 처치에 맡긴다.

(다) 응급환자의 개념

질병, 부상, 각종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라)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 요령

학교장 /안전책임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원에게 119 전화를 걸도록 지시하고 필요하면 응급구조요원들이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할 것을 지시한다. ○ 응급구조/응급처치/자동심장충격기 훈련을 받은 교직원이 사고 현장에 도착한 상황이 아니라면 이들을 사고 현장으로 보낸다. ○ 119 구급대원이 학교에 도착하는 즉시 사고 현장으로 갈 수 있도록 구급대원이 오는 장소에 직원을 미리 보내 놓는다. ○ 병원으로 이송되는 경우 부상자 곁에서 이들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교직원을 배치한다. ○ 부상자가 학교의 학생 또는 교직원인 경우 부모, 보호자 또는 그 밖의 적합한 가족구성원에게 부상(질환)의 형태, 현재 상황, 취해진 응급조치, 부상자가 이송된 병원이 어디인지 알린다. ○ 부상학생(교직원)에 관한 의료 관련 정보를 후송병원에게 명확하게 전달한다. ○ 응급의료 프로토콜의 가동과 관련하여 교직원들이 알아야 할 사항을 알려준다. ○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취한 모든 활동들을 기록한다. ○ 응급환자를 발생시킨 학교안전사고와 관련된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정신건강 치료'절차의 시행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을 내린다.
교사/직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즉각적으로 상황을 파악한다. 우선, 자기가 현장에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 응급의료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보건담당 교사/학교장/안전책임관에게 이를 알린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상이나 질환의 심각성을 파악한다. ○ 즉각적으로 119에 전화를 걸거나 다른 누군가에게 119에 전화하도록 한다. 학교명, 주소, 응급의료상황이 발생한 장소(건물명, 층수, 교실번호), 질환 또는 부상의 형태, 환자의 나이 등에 관한 사항을 제공하기 위한 준비를 해놓는다. ○ 환자의 신체에서 흘러나오는 피로 인해 감염되지 않도록 자신을 보호한다. ○ 응급의료인력(응급구조요원, 간호교사, 해당 응급처치 자격소지자 등)의 도움이 도착하기 전까지 자신이 받았던 응급처치 훈련의 수준에 맞는 응급처치를 실행한다. ○ 부상자의 호흡이 없거나 맥박이 뛰지 않는 경우 다른 사람에게 자동심장충격기(AED)를 가져오도록 말하고, AED가 도착하여 사용할 수 있기까지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한다. 만일 AED 사용법을 모르는 경우, 이에 관한 훈련을 받은 사람에게 연락하여 사용법에 대한 지시를 들어가며 AED를 사용한다.
--	--

(2) 폭파 테러

상황/단계	상황 및 단계별 조치사항
폭파 테러 협박전화를 받았을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속하게 112, 119에 신고하며, 교내방송을 통해 상황을 전파한다. ○ 학생을 복도로 집결시켜 건물 밖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킨다. ▶ 교사는 반드시 출석부를 지참하고, 학생 대피 후 마지막으로 대피한다. ▶ 폭발을 대비하여 책가방으로 머리를 보호하도록 지도한다. ○ 출석부로 인원을 파악하여 대피 못한 학생을 확인하고 조치한다. ○ 안전한 장소에서 학생 행동 요령 교육하며 불안감을 해소한다. ○ 학부모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안심을 시킨 후 경찰 등 관계기관의 안내로 학생을 인계한다. ○ 교육청 등에 상황보고를 한다.
폭발물 발견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견 즉시 112, 119에 신고하며, 교내방송을 통해 상황을 전파한다. ○ 학생을 복도로 집결시켜 건물 밖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킨다. ▶ 교사는 반드시 출석부를 지참하고 학생 대피 후 마지막으로 대피한다. ▶ 안전거리(붕괴: 건물 높이 이상, 폭발: 500m이상) 밖으로 대피한다. ○ 출석부로 인원을 파악하여 대피 못한 학생을 확인하고 조치한다. ○ 대피 장소에서 학생 행동 요령을 교육하며 불안감을 해소한다. ○ 학부모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안심을 시킨 후 경찰 등 관계기관의 안내로 학생을 인계한다. ○ 교육청 등에 상황보고를 한다.
폭발로 인한 매몰·붕괴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속하게 112, 119에 신고한다. ○ 매몰되지 않은 학생들을 신속하게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킨다. ○ 대피장소에서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다친 학생이 있다면 구조대가 오기전까지 응급조치를 한다. ○ 대피 못한 학생 및 교사 현황을 파악하여 구조기관에 알린다. ○ 학부모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안심을 시킨 후 경찰 등 관계기관의 안내로 학생을 인계한다. ○ 관계기관(소방서, 경찰 등)과 함께 구조에 협력하고 교육청 등에 상황을 보고한다.

(3) 화학테러

상황/단계	상황 및 단계별 조치사항
테러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생 즉시 112, 119에 신고하며, 방송을 통해 상황을 전파한다. (장소, 연기 발생 여부, 물질의 색상, 냄새, 증상 등 현장 상황을 가급적 구체적으로 알린다.)
대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을 복도로 집결시켜 건물 밖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킨다. ○ 학생 대피 시 방독면, 비닐, 손수건, 화장지 등을 활용 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 교사는 반드시 출석부를 지참하고, 학생 대피 후 마지막으로 대피한다. ○ 출석부로 인원을 파악하여 대피 못한 학생을 확인하고 조치한다.
대피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피 장소에서 학생 행동 요령을 교육하며 불안감을 해소한다. ○ 학부모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안심을 시킨 후 경찰 등 관계기관의 안내로 학생을 인계한다. ○ 교육청 등에 상황보고를 한다.

(4) 생물테러

상황/단계	상황 및 단계별 조치사항
상황 발생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즉시 119, 112에 신고하며, 방송을 통해 상황 전파 ○ 학생을 복도로 집결시켜 건물 밖 안전한 곳으로 대피 ○ 학생 대피 시 비닐, 손수건 등을 활용하도록 조치 ▶ 교사는 반드시 출석부를 지참하고, 학생 대피 후 마지막으로 대피 ○ 대피 장소에서 학생 행동 요령을 교육하며 불안감을 해소 ○ 학부모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안심시킨 후, 경찰, 보건기관 등 관계기관의 안내로 학생을 인계 ※ 생물 테러 감염병 의심 시, 병원 이송 조치를 할 경우도 있음 ○ 교육청 등에 상황 보고

(5) 방사능 테러

상황/단계	상황 및 단계별 조치사항
테러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속하게 119, 112에 신고하며, 방송을 통해 상황전파를 한다.
대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을 건물 밖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킨다. ▶ 방사능 오염 여부를 확인하고 오염되지 않았다면 외부로 나오지 말고 그대로 있는 것이 좋다. ○ 학생 대피 시 방독면, 마스크, 비닐, 물수건 등을 활용 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 평소 비닐봉지, 비닐, 물수건 등 대체 물자를 활용한 화재방 대피요령 교육 실시 ▶ 교사는 반드시 출석부를 지참하며 학생 대피 후 마지막으로 대피한다.
대피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석부로 인원을 파악하여 대피 못한 학생을 확인하고 조치한다. ○ 대피한 곳에서 창문을 모두 닫고 에어컨, 환풍기 등을 끈다. ○ 대피 장소에서 학생 행동 요령을 교육하며 불안감을 해소한다. ○ 학부모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안심을 시킨 후 학생을 인계한다. ○ 교육청 등에 상황보고를 한다. ○ TV·라디오·인터넷 등을 적극 활용하여 향후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주의 깊게 확인한다.

(6) 무기에 의한 테러

상황/단계	상황 및 단계별 조치사항
교내에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격이 발생했을 경우 학생을 즉시 바닥에 엎드리게 한다. ○ 112, 119 신고 시 안전 확보에 가장 유의하며 소리를 낼 수 없는 경우 휴대전화 문자를 이용해 신고한다. ○ 총격소리가 들린 방향을 가늠하고 주의를 살펴 학생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킨다. (몸을 최대한 가릴 수 있는 기둥이나 방어물이 있는 곳으로 이동) ○ 학생이 인질이 되었을 때는 위협자의 지시에 따르고 절대 자극하지 않도록 한다. ○ 교육청 등에 보고 한다.
교외에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격이 발생했을 경우 학생을 즉시 바닥에 엎드리게 한다. ○ 112, 119 신고 시 안전 확보에 가장 유의하며 소리를 낼 수 없는 경우 휴대전화 문자를 이용해 신고한다. ○ 주변 학생들을 최대한 낮은 자세를 유지하면서 몸을 가릴 수 있는 기둥이나 방어물이 있는 곳으로 대피시킨다. ○ 학생이 인질이 되었을 때는 테러범의 지시에 따르고 자극하지 않는다. ○ 교육청 등에 보고 한다.

IV 학교 시설 안전 점검·관리·조치

1. 학교 시설 안전 점검

가. 매월 안전 점검의 날

-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6,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6
- 관할 시도 교육청 지침에 따라 점검 실시

나. 해빙기, 여름철, 겨울철 안전 점검

- 관할 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라 점검 실시

2. 학교 시설 안전 관리 및 조치

가.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에 따른 관리 및 조치

- 근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조

나. 개별 법령에 의한 학교시설물 관리

구분	관계법령	주요내용
건축	건축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허가 및 신고대상 공사 설계도서 건축사 작성(제23조) ◦ 건축허가 대상 공사의 건축사 감리 지정여부(동법 시행령 제19조) ◦ 철거예정 7일전 시장군수 구청장 신고(제36조) ◦ 건축물 철거 후 멸실 신고(제36조) ◦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 철거의 경우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제거 및 결과의 기록 보관 (제36조)
전기	전기사업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제73조) ◦ 전기안전관리자의 정기점검* 실시(제65조) *매월 1회 이상, 용량별로 월 3회 이상
도시가스	도시가스사업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관리자 선임(제29조) ◦ 도시가스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제30조) ◦ 점검기관(가스안전공사 등)으로부터 연 1회 이상 정기검사(제17조)
승강기	승강기안전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및 승강기관리교육*(제16조) *승강기안전관리자가 지정 3개월 이내 교육이수 ◦ 월1회 자체점검 실시 후 점검기록부 보관(제17조) ◦ 연1회 이상 정기검사 및 정기정밀점검*(제13조) *설치 후 15년 이상된 승강기 및 중대한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한 승강기 대상
수도시설	수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시설에 절수설비 설치(제15조) ◦ 저수조 청소*실시, 위생상태 점검** 기록보관 및 수질검사*** (제33조) *반기1회 이상, **월1회 이상, ***연1회 이상 ◦ 수도관리자 교육(제36조) ※ 1년내 8시간의 집합교육 및 이에 상응하는 인터넷교육
하수도시설	하수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화조 내부청소* 연1회 이상 실시(제33조) *침전찌꺼기와 부유물질 등 제거
장애인편의시설	장애인 노인 임산부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노인임산부 등 최단거리 이동편의시설 설치(제3조)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정(제17조) ◦ 장애인 접근로 적정 설치(동법 시행령 제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출입구에 휠체어 통행용이 및 출입문 시설 - 장애인 복도 통행에 지장 없는 관리 - 장애인용 계단 또는 승강설비 적정 설치 - 장애인용 대.소변기 설치 - 점자블럭,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구비
소방시설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소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관리(법 제10조) ※ 시설폐쇄, 훼손여부 및 주위 장애 사항 등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규정 제5조) ◦ 자위소방대 편성·운영(규정 제12조)

구분	관계법령	주요내용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방안전교육과 훈련 실시(규정 제14조) ※ 연2회 이상 실시 중 1회는 소방서와 합동 훈련 자체점검계획 수립 및 자체점검(월1회 이상), 기록보관(규정 제15조) 소방종합정밀점검(연1회 이상) - 소방서장 보고(법 제19조) 각실 책임자의 화기단속 및 예방 조치(규정 제9조)
석면	석면안전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시설 석면조사 실시 및 결과 보관(제21조) 석면조사결과 보고 - 교육감(제22조) 석면안전관리자 지정 보고 - 교육감(제23조) 석면안전관리자 안전관리 교육(제24조) ※ 관리자 신고 후 1년이내 6시간 이상
급식시설	학교급식법 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한 조리기기, 냉장·냉동시설, 세척·소독시설 구비(제7조) 급식관리실에 필요한 사무장비 구비(제7조) 조리종사원 숫자에 맞는 휴게시설 구비(제7조) 급식시설 설치 시 기준*에 따라 시설설비 구비(시행규칙 제3조) * 시행규칙 제3조 별표 1 시설설비 기준
어린이 놀이시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검사기관 정기시설검사(2년 1회 이상) 결과 표시(제12조) 자체안전점검 월1회 이상 실시(제15조) 3년간 안전진단실시결과 기록보관(제17조) 놀이시설 안전관리담당자 안전교육 실시(제20조) ※ 2년 1회 이상, 1회 안전교육 4시간 이상 어린이 놀이시설 보험가입(제21조) 어린이 놀이시설 사용금지의 경우 관리감독기관에 통보(제16조) 어린이 놀이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적합(제11조)
외부인 출입	초·중·등교육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부인 출입, 학교폭력예방 학생안전대책 수립(제30조)
학교보건	학교보건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건실 66㎡이상 확보 및 세부기준 적합여부(제3조 및 시행규칙 제2조) 학생안전교육, 학교 시설·장비의 점검 및 개선 조치(제12조) 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제4조) 학교 환경위생담당자 지정·관리(규칙 제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내 환기·채광·조명·온습도의 조절기준과 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 관리 상하수도·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폐기물 및 소음의 예방 및 처리기준 교사 안에서의 공기의 질에 대한 유지 식기·식품·먹는 물의 관리 등 식품위생 관리
공사발주	산업안전보건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 발주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제30조) 석면 해체 시 등록업체(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 해체·제거(제38조)
시설사업 촉진	시설사업 촉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신설, 학교용지 변경시 교육청에 사업시행계획 승인(제4조) 학교용지 내 시설물 증축, 대수선의 경우 교육청 건축승인(제5조) 시설사업 종료 후 7일 이내 교육청 신고 및 건축물 사용승인(제18조)
폐기물 관리	폐기물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폐기물의 종류, 성질, 상태별 분리보관(제15조) 사업장 폐기물의 전문업체 위탁 처리 여부(제15조)
하수도	하수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 내 하수 및 배수관 신설의 경우 공공하수도 유입(제2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내 오수 배출 건물 증축 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제34조) *정화조 등의 시설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제37조) 개인하수처리시설 기준*의 의한 설치(제24조) *하수처리구역안 정화조설치, 하수처리 구역 밖 1일 오수처리량 2㎡이상 오수처리 장치 연결, 그 이하 정화조 설치

VI. 안전사고 피해회복

1. 학교안전공제회 사고통지 및 공제급여 청구절차

구 분	업 무 처 리	
학 생	사고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안전사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피공제자(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사고 -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피공제자에게 발생하는 급식, 가스 등에 의한 중독, 일사병, 이물질 섭취·접촉에 의한 질병 등
학 교	사고 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급여관리시스템 접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ww.schoolsafe.or.kr - 학교별 ID/비밀번호 입력 • 내부결재 후 통보버튼 눌러 공제회 전송
시·도 공제회	공제회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통지서 접수
학 생	치 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원치료
학 교 또는 학부모	공제급여 청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급여관리시스템 접속(PC 및 스마트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ww.schoolsafe.or.kr - (학 교)학교별 ID/비밀번호 입력 (학부모)휴대폰 인증 후 로그인 • 사고통지서 조회 후 청구서 입력 • 해당지역 공제회 및 시스템에 첨부서류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첨부서류 : 청구서, 통장사본, 진료비계산서, 50만원 이상시 진단서·등본
시·도 공제회	공제회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결정
시·도 공제회	지급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급여 지급 및 결정내역 통보
학부모	심사청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회의 지급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90일 이내 시·도 공제회의 보상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상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90일 이내 중앙회의 보상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

2. 학교안전공제중앙회 학교배상책임 공제급여 청구절차

	구 분	업 무 처 리
피공제자 및 제3자	사고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배상책임사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활동 또는 학교시설물 관리업무로 인하여 제3자가 입은 인적·물적 피해 및 교직원·교육활동참여자의 차량파손 피해 - 어린이놀이시설 하자에 의한 인적·물적 피해 - 학교급식 관리·운영과 관련하여「식품위생법」제101조에 따라 학교장에게 부과된 과태료 - 학교승강기사고에 의한 인적·물적 피해 - 학교 관리 하의 학생 휴대폰 분실·파손 피해
학 교	사고 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회 공제사업 업무처리시스템 접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ttp://ssifins.or.kr:8001/ - 학교별 ID/비밀번호 입력 • 사고등록 후 통보버튼 눌러 공제중앙회 전송
공제 중앙회	사고 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통지서 접수
피공제자 및 제3자	치료·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원치료 및 파손물품 수리 진행
학 교 또는 피해자	공제급여 청 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회 공제사업 업무처리시스템 접속(PC만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ttp://ssifins.or.kr:8001/ - 학교별 ID/비밀번호 입력 • 사고통지서 조회 후 공제급여청구서 입력 • 중앙회 공제사업 업무처리시스템에 증빙서류 첨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단서, 영수증, 수리내역서, 수리완료사진, 통장사본 등
공제 중앙회	청구 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결정
	지급 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급여 지급 및 결정내역 공문 통보
피해자	심사청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중앙회의 지급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90일 이내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보상재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

3. 안전사고 피해 회복

가. 학교안전 관련 인적·물적 피해보상

공제사업	학교안전공제 (시도 학교안전공제회)	사각지대 공제사업 (학교안전공제중앙회)	교육연구시설공제 (교육시설재난공제회)
공제로 납부	학교(행정실)	별도 가입 불필요	별도 가입 불필요(교육청)
사고통지 담당	교과교사 및 담임교사	해당 교사	행정실 담당자
보상청구 담당	학부모	-	행정실 담당자

나. 학교안전사고 피해회복지원

- 향후 정책연구를 통해 학교안전사고 피해회복지원단과 분쟁조정지원단이 구성되고 활동이 개시되면 제도 시행을 통보 예정
-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제도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내

1) 공제급여의 종류

가) 요양급여

-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비용
- 국민건강보험에서 인정하는 급여항목 치료비 전액과 국민건강보험에서 불인정하는 비급여항목 치료비의 일부 항목(선택진료비, MRI, 무통주사제, 화상치료제, 성형수술비, 응급의료 관리료, 물리치료, 치아보철, 재활보조기구 및 통합재활훈련, 진단서 발급 수수료, 외국 체류 중 치료)에 대하여 지급

나) 장애급여

- 요양을 종료한 후에도 장애가 있는 때「국가배상법」에 따른 국가배상기준에 의거하여 산정된 금액을 지급
- 일실수익(생활비 포함)과 위자료를 지급대상으로 하며, 유치원부터 고등학생의 경우 호프만계수가 적용됨에 따라 최대 3~4억원의 보상금이 산정
- 간병급여는 치료 후에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지급하는데 주로 장애 1·2급 사고자가 대상

다) 유족급여

-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국가배상법」에 따른 국가배상기준에 의거하여 산정된 금액을 지급
- 일실수익(생활비 제외)과 위자료를 지급대상으로 하며 생활비를 제외하기 때문에 장애급여보다 약 5천만원이 적은 2.5~3.5억원의 보상금이 산정
- 사망 시에는 장례에 소요될 비용으로 평균임금의 100일분에 상응하는 장의비를 별도로 지급

라) 위로금

- 위로금은 심장마비, 돌연사 등 피공제자가 학교안전사고 이외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사유로 사망한 경우 4천만원을 정액으로 지급

마) 비용의 보전

- 교직원 등이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손해방지비용, 필요비 및 유익비, 민.형사소송비용 및 공탁금 등을 지출한 경우 학교안전공제회가 이를 보전하여 주는 제도
-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법적 분쟁으로 인하여 교직원이 부담하는 법절차 비용을 학교안전공제회가 부담토록 함으로써 교단의 안정을 꾀함을 목적

바) 공제급여의 지급제한

- 피공제자가 자해, 자살한 경우, 피공제자가 요양기관 지시 불이행 또는 치료를 명백히 방해한 경우, 수급권자가「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공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 부지급

사) 과실상계와 기왕증 감액

- 요양급여를 제외한 장애·간병급여 및 유족급여로서 장애·사망이라는 결과를 초래함에 있어 피해학생의 과실이 개입된 경우 손해와의 인과관계의 범위 내에서 해당 금액을 감액하고 지급

- 과실상계는 초등학교 4학년 이상에 대하여 50% 이하로 적용될 수 있으나, 인지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신체적 결함이 있는 피공제자에 대하여는 미적용
- 피공제자에게 이미 존재하던 질병, 부상 또는 신체장애 등이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악화된 경우에는 이미 존재하던 질병, 부상 또는 신체장애 등 기왕증의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하고 공제급여를 지급 가능

아) 구상권 행사

- 학교안전공제회가 지급한 공제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 또는 그 보호자 등에게 청구할 수 있는 제도
- 피공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 ※ 공무원의 중과실이라 함은 공무원에게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대법원 2003다13307)
- 피공제자 또는 공제가입자가 아닌 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2) 학교안전사고 통지와 공제급여 청구

-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공제가입자인 학교장은 지체 없이 학교안전공제회에 통지(학교안전법 제44조제2항)
- 공제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공제회에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학교안전법 제41조제1항)

3) 공제급여의 결정

가) 학교안전공제회는 공제급여의 종류별로 공제급여액을 결정(학교안전법 35조제1항).

- 피해자는 학교안전공제회에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학교안전공제회는 14일 이내에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다만 조사의 필요성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14일을 연장 가능

나)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피해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 등으로 공제가입자 또는 피공제자가 지급하여야 할 보상액 또는 배상액이 확정되는 경우 그 확정된 금액은 공제급여액으로 보아 학교안전공제회가 이를 부담(학교안전법 제35조제2항).

다) 국민건강보험 구상권행사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액(학교안전법 제36조제2항)

- 법원의 판결 등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에 따라 공단의 구상권 행사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확정된 경우 학교의 장이 부담할 부분은 학교안전공제회가 부담

4) 공제급여 결정에 대한 불복

가) 학교안전공제는 학교안전사고 분쟁의 신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청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의 3심 제도를 두고 있음

나) 학교안전공제회의 공제급여 결정 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불복하는 경우 학교안전공제회에 설치된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 가능(학교안전법 제57조)

다)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에 대하여도 불복하는 경우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설치된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학교안전법 제61조)

라) 심사 및 재심사청구 제도는 사고 관련자 간의 법적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교단의 안정이 침해되고, 불필요한 법적 비용 발생으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원 소송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임

5) 심리치유제도

가)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 그 가족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학교안전법 제10조의3)

- 나) 상담 및 심리적 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 다) 상담 및 심리적 치료의 지원대상자를 정하기 위하여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설치
- 라)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지원대상자에게 지정된 상담 및 심리적 치료기관을 통지

6)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법적 대처요령

- 가) 학교안전사고는 학생들 간의 장난, 게임, 사소한 다툼 등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따른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쌍방의 과실이 경합되는 등 처리가 곤란한 경우가 대부분
- 나) 가해자가 명확한 경우라 해도 그 책임을 묻기가 쉽지 않으며, 경제적 배상 능력이 없는 경우도 발생가능
- 다) 초기 대응이 미숙할 경우 피해학생과 학부모의 불만이 팽배하고 학교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어 의사소통에 어려움 발생 가능
- 라) 학교안전사고 처리과정에서의 감정적인 문제로 인해 해결이 곤란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며 사고처리 결과를 예단하는 것은 사고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없으므로 각별한 유의 필요
- 마) 보건교사 혹은 사고현장 관리교사는 사고발생 경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육하원칙에 의해 기록하고 사고 현장 사진을 확보하며, 주위에 함께 있던 학생 등도 기록. 아울러 교사의 직무 수행과 사후조치 내용도 기록
- 바) 책임관계에 관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고발생 과정을 잘 알고 있는 증인을 확보
- 사) 사고처리에 있어 사고담당자를 지정함으로써 학교 측의 창구를 단일화
- 아) 사고처리에 관한 사항은 학생의 친권자인 학부모와 직접 협의한다. 학부모 아닌 제3자 개입 시, 사고처리의 본질 왜곡 가능
 - 손해사정사가 피해학생을 대신하여 금전적 대가를 받고 피해보상을 중재하는 것은 변호사법 제109조를 위반
- 자) 학교안전사고의 처리와 관련한 법적 자문 방법
 - 시도교육청 법무담당관실에 소속된 변호사 자문
 - 학교안전공제중앙회(1688-4900) 또는 시·도 학교안전공제회 콜센터 문의

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사각지대공제사업

교육활동 또는 학교안전사고와 관련되었음에도 학교안전법에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

구분	가입자	보상대상	보상범위
학교배상책임공제	학교장	교육활동 제3자피해, 휴대폰 도난피해 어린이놀이시설 피해, 급식과태료	대인·대물 1억 과태료500만원
청소년활동안전공제	청소년 단체장	청소년활동 중 안전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	1인당 10억 대물 1억
	수련시설장	수련활동 중 안전사고 피해	학생 : 국가배상기준 기타 : 8천만원
한국학교안전공제	한국학교장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 피해	요양급여 : 2천만원 장해,유족,간병 : 2억원

라. 물적 피해 복구(교육연구시설공제)

- 화재, 폭발, 붕괴 및 태풍 등으로 인한 학교건물 및 물품의 피해와 이 피해로 인한 인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해 교육시설 재난공제회는 교육연구시설공제를 운영
- 교육시설재난공제회는 교육연구시설의 피해복구와 안전도모를 위해 각급학교 경영자를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민법(제32조)상 사단법인적 성격의 공익법인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에 관한 법률 제4조(건물소유자 손해배상책임) 및 제5조(보험가입 의무)에 따라 당해 특수건물은 손해보험회사 또는 교육시설재난공제회가 영위하는 신체손해배상특약부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가입대상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의 학교건물 및 교육지원시설과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시설임
- 가입주체는 유치원장, 초.중등학교장, 대학총장, 학력인정시설의장임
- 공제료 산정방식

건물	건물면적 × 단위공제료(원)
고가건물	가입금액 × 적용비율(%)
폐교건물	건물면적 × 단위공제료(원)
물품	물품취득가액(100만원 이상) × 적용비율(%)
건물 부속물	부속물 신설단가 × 적용비율(%)

- 보상범위
 - 건물.물품은 화재(벼락 포함), 폭발, 붕괴 및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한파로 인한 피해를 보상
 - 인명손해는 건물의 화재(벼락 포함), 폭발, 붕괴 및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한파로 인한 신체손해를 보상
- 보상기준
 - 건물.물품은 전손全損인 경우 건물의 현시가와 관계없이 신축단가를 지급하고, 분손分損인 경우 복구 실소요액을 지급
 - 인명손해는 부상의 경우 치료실비를 전액 지급하고, 사망.장해의 경우 호프만계수에 의해 산출한 실손해액을 한도 없이 지급

2022년 학교안전계획 추진실적 평가표

□ 기관명 : 신천중학교

분야	평가지표(평가내용) ※ 2023.2.28. 기준	○/×	향후대책
1.학교안전사고 예방체제 구축	1. 학교 재난대응(사고현장 지휘소)의 역할, 책임을 학교 실정에 맞게 구성·운영함	○	
	2. 학교안전의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 유관기관(지자체, 소방서, 경찰서 등) 간 협력이 잘 이루어짐	○	
	3. 학교안전계획을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 누구나 로그인 없이 확인할 수 있음	○	
	4. 학교와 주변지역의 위험에 적합한 예방-대비-대응-복구 활동계획이 잘 운영됨	○	
2.안전한 교육 활동 환경조성	5. 재난 발생 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비상배낭을 구성 하여 비치 및 활용함	○	
	6. 식중독 및 각종 전염병(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모든 절차와 지침을 준수함	○	
3.학교안전교육 내 실 화	7. 학생안전교육 관련 교육부 고시(제2021-21호)기준을 준수 하여 운영함 ※ 2022학년도: 안전교육 (학교) 최소 33차시, (유치원) 44단위활동	○	
	8. 교육활동참여자에 대해 규정에 맞게 안전연수를 실시함	○	
4. 학 교 안전문화 확산	9. 학생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재난대응훈련(안전 교육)을 실시함	○	
	10. 학생이 스스로 만들어 가는 교육활동을 운영함 ※ (예시) 학생 주관 참여, 안전계획 수립 시 학생 의견 반영 등	○	
	11. 학교 안전점검의 날을 내실 있게 운영함	○	
	12. 학교 각종 행사 시작 전 모든 참석자 대상으로 안전 교육을 실시함	○	
5. 피 해 회 복 및 재발 방지	13. 정서행동 특성검사 및 심리검사 결과 활용 등 위기학생 조기발견을 위해 노력함	○	
	14. 학교안전사고(학교폭력 포함) 피해자에 대해 심리치료 등 내실 있게 지원함	○	
	15. 안전사고 발생 시 원인분석, 대응방법, 교훈 등에 대해 자료를 누적 관리하고 있음	○	
안전사고 발생 건수	* 기준자료 : 학교안전공제회에 보상 신청 건 수		
	- 2022.3.1. ~ 2023.2.28 발생 건 수 : 24 건		코로나 완화로 신체활동 증가
	- 2021.3.1. ~ 2022.2.28 발생 건 수 : 8 건		코로나로 인한 신체활동 감소
	- 2020.3.1. ~ 2021.2.28 발생 건 수 : 9 건		코로나로 등교일 수 감소
	- 2019.3.1. ~ 2020.2.28 발생 건 수 : 12 건		학생수 감소
	- 2018.3.1. ~ 2019.2.28 발생 건 수 : 12 건		학생수 감소
	- 2017.3.1. ~ 2018.2.28 발생 건 수 : 20 건		스포츠클럽의 활동 증가
- 2016.3.1. ~ 2017.2.28 발생 건 수 : 20 건		스포츠클럽의 활동 증가	

2023. 3. 16.

평가자 : 학교안전책임관 정 ** (확인)
 확인자 : 학 교 장 신 ** (확인)

2023년 학교안전계획 수립 평가표

□ 기관명 : 신천중학교

분야	16대 과제	평가지표(평가내용) ※ 2023. 3. 31. 기준	계획수립	
			○/×	미흡한 경우 향후대책
1. 학교안전사고 예방체제 구축	① 학교 안전 계획 수립. 평가의 내실화	1. 학교 재난대응(사고현장 지휘소)의 역할, 책임을 학교 실정에 맞게 구성하였는가? ※ 학교 교직원 비상연락망 구축 포함	○	
		2. 학교 위기상황 발생 시 교육지원청, 도교육청, 교육부 보고 절차, 방법을 기술하였는가? ※ 학교 안전사고 발생 시 선조치 후보고	○	
		3. 학교안전계획에서 안전업무와 관련하여 관련 교직원들의 역할과 책임에 대하여 명확히 기술하였는가? ※ 학교안전책임관, 안전부장을 운영해야 함	○	
		4. 학교와 주변지역의 위험성을 파악한 후, 이에 적합한 학교안전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5. 학교안전계획 수립 시 안전담당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직원들이 함께 참여하였는가? - 민주적 절차에 따라 계획을 수립(○) - 신규, 전입 교사, 1인 단독 수립(×)	○	
		6. 학교안전계획 수립 관련 법령에 정해진 절차, 기간을 모두 준수 하였는가? ※ 2월말까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확정, 3월말까지 교육지원청 제출	○	
		7. 학교안전계획을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 누구나 로그인 없이 확인할 수 있는가? - 홈페이지 게시, 로그인 없이 확인 모두 충족 시(○)	○	
	② 학교 안전 조직 운영 및 유관기관 네트워크 강화	8. 학교안전의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 유관기관 (지자체, 소방서, 경찰서 등) 간 협력 계획이 마련되었는가?	○	
2. 안전한 교육 활동 환경 조성	① 안전한 학교 시설 확보	9.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에 따른 학교시설 안전 점검을 계획·실시 하였는가?	○	
	②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	10. 학교 CCTV 설치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는가? - 계획수립 및 홈페이지 게시 모두 다 충족시 (○)	○	
		11. 재난 발생 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비상 배낭을 구성하여 비치하였는가?	○	

분야	16대 과제	평가지표(평가내용) ※ 2023. 3. 31. 기준	계획수립	
			○/×	미흡한 경우 향후대책
3. 학교안전교육 내 실 화	①경기도안전교육 과 정 의 안 착	12. 학사일정별 연간 안전관리계획은 교육부 고시(제2021-21호)의 기준에 따라 수립되었는가? ※ 2023학년도 학교안전교육 최소 51차시 → 융합교육정책과-2546(2023.2.24.)	○	
	②방과후학교 및 학교 밖 교육활동 안 전 관 리 강 화	13. 현장체험학습(진로체험, 수련활동, 수영수업 등) 안전대책으로 학년 또는 학급별로 비상배낭 등을 활용 할 수 있도록 구비 되어있는가?	○	
		14. 현장체험학습 계획 시 현장체험학습 매뉴얼을 교사들에게 공유하고, 계획에 반영하였는가?	○	세부시행계획에 맞추어 실시할 예정
	③분야별 안전사고 예 방 교 육 강 화	15. 수상안전(초등), 물놀이 안전, 실험실습 안전, 체육 활동에 대하여 학교안전계획에 포함되었는가? ※ 분야별 별도 지침계획을 학교안전계획에 명시(○)	○	
	④교육공동 체 의 안 전 대 응 역 량 신	16. 안전교육 교사연수 연간계획은 준비 되었는가? ※ 모든 교직원은 3년 내 15시간 이상의 안전연수 이수	○	
	⑤안전취약계층 안 전 관 리 강 화	17. 안전취약계층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안전 대책을 마련하였는가?	○	
4. 학 교 안전문화 확산	①학 교 구 성 원 안 전 의 식 제 고	18. 학생 참여형 활동 운영 계획이 있는가? ※ (예시)안전동아리, 안전캠페인 등	○	
	②학 교 안 전 문 화 활 성 화 지 원	19. 매월 안전점검의 날에 따른 학교시설 안전 점검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20. 학교 안전주간 운영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2023.8월 예정
		21. 체육대회, 축제, 졸업식 등 각종 행사 시 안전 사고예방 계획 및 행사 시작 전 참석자 대상으로 안전교육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세부시행계획에 맞추어 실시할 예정
	③체험중심 맞춤형 안 전 교 육 생 활 화	22. 학교 구성원 모두 체험할 수 있는 재난대응 훈련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예시)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화재대피 훈련	○	
		23.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이 높은 재난 유형을 고려하여 재난대비훈련을 계획했는가?	○	
5. 피 해 회 복 및 재발 방지	①상 담 및 치 료 지 원	24. 정서행동 특성검사 및 심리검사 결과 활용 등 위기학생 조기발견과 생명존중 교육 계획을 수립 하였는가?	○	
		25. 학교안전사고(학교폭력 포함) 피해자에 대한 심리치료 지원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②학 교 안 전 사 고 보 상 제 도 활 용	26. 재난과 학교안전사고의 보고와 보상에 관한 절차와 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마련해 놓았는가?	○	
	③안 전 사 고 재 발 방 지	27. 안전사고 발생 시 원인분석, 대응방법, 교훈 등에 대해 자료를 누적 관리하고 있는가?	○	

2023. 3. 16.

평가자 : 학교안전책임관 정 ** (확인)
 확인자 : 학 교 장 신 ** (확인)

2023학년도 교실 배치도 및 대피로

